
2023년 예산개요

2023. 1.



국민권익위원회

목 차

1. 세입예산 총괄표	1
1-1. 세입예산 사업설명서	
○ 과태료	2
○ 기타경상이전수입	3
○ 기타잡수입	4
2. 세출예산 총괄표	5
2-1. 세출예산 사업설명서	
○ 인건비(대상)	6
○ 기관운영기본경비(대상)	8
○ 기관운영기본경비(비대상)	10
○ 청렴권익정책알리기	12
○ 행정정보시스템운영(정보화)	15
○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(정보화)	17
○ 반부패기술지원(ODA)	19
○ 청렴권익국제교류	21
○ 청렴권익민간협력	24
○ 부패·고충제도개선	28
○ 종합상담창구운영	33
○ 고충민원조사활동	37
○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	40
○ 청렴교육및의식확산	44
○ 공직자행동강령운영	46
○ 부패신고자보호보상	50
○ 공익신고제도운영	53
○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	57
○ 청탁금지제도운영	62
○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	66
○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	69
○ 행정심판운영	72

1. 세입예산 총괄표

○ 세입예산 총괄표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1 결산	2022예산 (A)	2023예산 (B)	증 감 (B-A)	%
합 계	435	539	823	284	52.7
【일반회계】	435	539	823	284	52.7

【일반회계】

(단위 : 백만원)

세입원 (관)	세입항 (항)	목	2021 결산	2022예산 (A)	2023예산 (B)	증 감 (B-A)	%
합 계			435	539	823	284	52.7
경상 이전 수입	벌금, 몰수금 및 과태료	과태료	40	100	110	10	10.0
		징계 부가금	1	-	-	-	-
	위약금	위약금	0.03	-	-	-	-
	기타경상 이전수입	기타경상 이전수입	393	389	663	274	70.4
재화및 용역판매 수입	잡수입	기타 잡수입	1	50	50	-	-

1-1. 세입예산 사업설명서

과태료
56 - 563

< 일반회계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과태료	40	100	100	110	110	10	0.1

1. 법적 근거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6 (이행강제금)
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1조의2(이행강제금)
-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2(이행강제금)

2. 세입 개요

-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: 4,000만원
-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: 4,000만원
- 청탁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: 3,000만원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수납액	22	37	40	110

기타경상이전수입
59 - 596

< 일반회계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기타경상이전수입	393	389	389	663	663	274	70.4

1. 법적 근거

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9조(보상금 및 구조금의 환수)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0조의2 (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)
-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6조(보조금의 지원)
- 「국고금 관리법」 제15조(과오납금의 반환)

2. 세입 개요

-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상환액 : 1억 300만원
-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상환 : 5억 4,000만원
-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: 1,000만원
- 과오납금 반환 등 : 1,000만원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수납액	887	281	378	1,058

기타잡수입
69 - 691

< 일반회계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기타잡수입	1	50	50	50	50	-	-

1. 법적 근거

- 공무원 인재개발법」 제16조(교육훈련기관의 운영)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(비용 부담)

2. 세입 개요

- 청렴연수원 시설물사용료 등 : 5,000만원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수납액	59	5	1	8

2. 세출예산 총괄표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'22예산 (A)	'23예산 (B)	증감 (B-A)	%
총지출	93,288	94,958	1,670	1.8
□ 인건비	48,240	47,828	△412	△0.9
□ 기본경비	7,908	7,437	△471	△6.0
□ 주요사업비	37,140	39,693	2,553	6.9
○ 청렴권익문화확산	2,021	2,025	4	0.2
- 청렴권익정책알리기	2,021	2,025	4	0.2
○ 청렴권익행정정보화	8,752	11,213	2,461	28.1
- 행정정보시스템운영(정보화)	5,640	5,433	△207	△3.7
- 국민소통시스템구축및운영(정보화)	3,112	5,780	2,668	85.7
○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	1,221	1,214	△7	△0.6
- 반부패기술지원(ODA)	168	160	△8	△4.8
- 청렴권익국제교류	381	382	1	0.3
- 청렴권익민간협력	672	672	-	-
○ 부패·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	11,266	11,644	378	3.4
- 부패·고충제도개선	97	97	-	-
- 종합상담창구운영	11,169	11,547	378	3.4
○ 국민고충해소	1,331	1,331	-	-
- 고충민원조사활동	1,331	1,331	-	-
○ 반부패청렴정책강화	11,473	11,197	△276	△2.4
-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	2,522	2,644	122	4.8
- 청렴교육및의식확산	2,622	2,152	△470	△17.9
- 공직자행동강령운영	90	94	4	4.4
- 부패신고자보호보상	2,682	2,832	150	5.6
- 공익신고제도운영	2,083	1,923	△160	△7.7
-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및공공 재정환수제도운영	746	854	108	14.5
- 청탁금지제도운영	427	303	△124	△29.0
-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	301	281	△20	△6.6
-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	-	114	114	순증
○ 행정심판	1,076	1,069	△7	△0.7
- 행정심판운영	1,076	1,069	△7	△0.7

2-1. 세출예산 사업설명서

사 업 명
인건비(대상) (1101 - 10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운영지원과	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01	100
명칭	국민권익증진	인건비	인건비(대상)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인건비(대상)	43,253	48,240	48,166	47,828	47,828	△412	△0.9

4. 사업목적

-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기타직 공무원의 인건비 지급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법령상 근거 :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공무원보수규정」,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」
- 추진경위 :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출범부터 소속공무원 및 기타직공무원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 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47,828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기타직 공무원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 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- 「공무원보수규정」,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등에 따라 집행

사 업 명
기관운영기본경비(대상) (1111 - 20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운영지원과	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11	200
명칭	국민권익증진	기본경비	기관운영기본경비(대상)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기관운영 기본경비(대상)	2,667	3,088	3,080	3,064	3,064	△24	△0.8

4. 사업목적

-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집행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법령상 근거 : 「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
- 추진경위 :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로써 '08년 위원회 출범 이후 예산 편성·집행지침에 따라 연간소요액을 반영하여 계속 시행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3,064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위원회 소속 직원 등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-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, 「국가재정법」, 「국고금관리법」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기획재정부의 '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' 등에 의거하여 적법·타당하게 집행

사 업 명
기관운영기본경비(비대상) (1111 - 25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운영지원과	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11	250
명칭	국민권익증진	기본경비	기관운영기본경비(비대상)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기관운영 기본경비(비대상)	3,787	4,820	4,655	4,373	4,373	△447	△9.3

4. 사업목적

-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집행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법령상 근거 : 「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
- 추진경위 :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로써 '08년 위원회 출범 이후 예산 편성·집행지침에 따라 연간소요액을 반영하여 계속 시행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4,373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위원회 소속 직원 등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-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, 「국가재정법」, 「국고금관리법」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기획재정부의 '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' 등에 의거하여 적법·타당하게 집행

사 업 명
청렴권익정책알리기 (1131 - 30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대변인	-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1	300
명칭	국민권익증진	청렴권익문화확산	청렴권익정책알리기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청렴권익정책알리기	1,591	2,021	1,941	2,025	2,025	4	0.2

4. 사업목적

- 위원회의 청렴·권익구제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대국민 홍보 추진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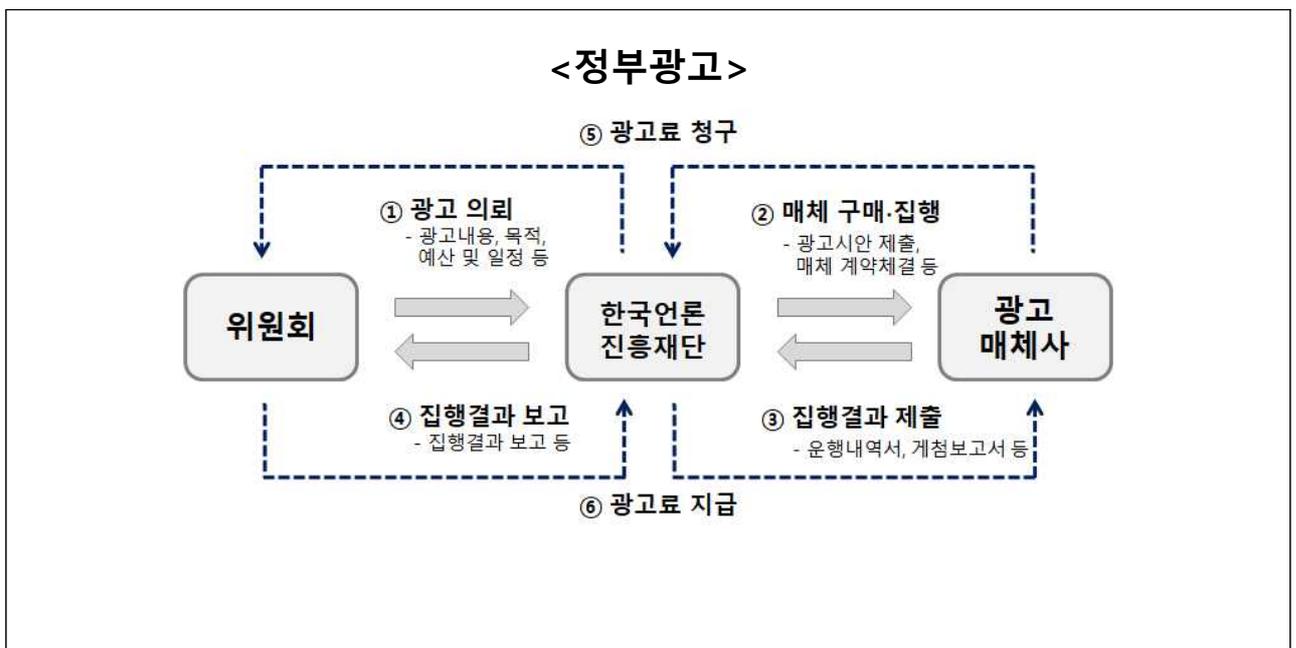
- 법령상 근거
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81조

- 추진경위
 - 2008.2월 국민권익위원회 출범
 - 보도자료 배포·인터뷰·기고 실시 및 기획홍보, 이동신문고·현장조정 현장 취재
 - 효과적인 위원회 정책소개와 이용 유도를 위해 TV·라디오·신문·온라인·뉴미디어 광고 실시
 - 정책 소개를 위한 계간 「국민권익」 소식지 발간(2008.3월~)
 - 국민·정책수요자의 직접 참여 및 공감형 소통을 위해 「국민권익」 블로그 개설 운영
 -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기사 작성을 위해 정책기자단 청백리포터 선발·운영
 - 스마트기기 확산에 따라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기관 SNS(트위터, 페이스북, 유튜브) 등 운영
 - 영상콘텐츠를 통한 국민소통 확대를 위해 유튜브 방송채널 「권익비전」 개국(2019.9월)
 - 디지털소통팀(2020.6월 구성)을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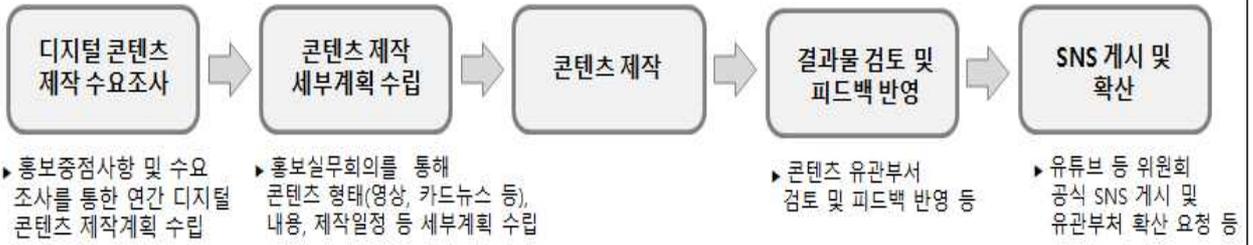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2,025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일반국민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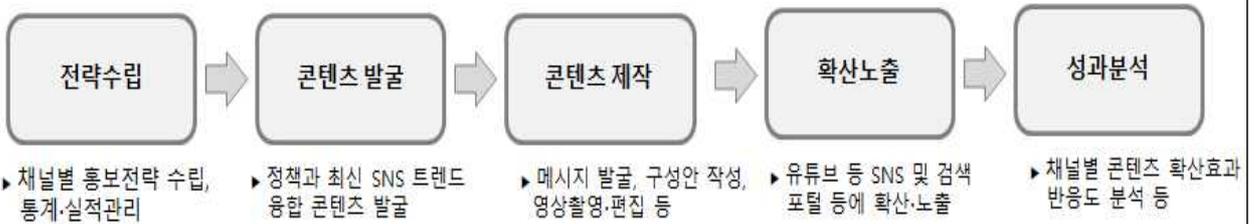
7. 사업 집행절차



<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확산>



<SNS 위탁관리용역>



사 업 명
행정정보시스템운영(정보화) (1132 - 32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기획조정실	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2	320
명칭	국민권익증진	청렴권익행정정보화	행정정보시스템운영(정보화)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 (B-A)	(B-A)/A
		본예산(A)	추경	정부안	확정(B)		
행정정보시스템 운영	4,985	5,640	5,640	5,433	5,433	△207	△3.7

4. 사업목적

- 대내·외 정보통신 환경변화와 새로운 정보화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정보시스템* 구축·운영, 정보자원의 안정적인 운영·관리 및 사이버보안 강화

* 부패방지·행정심판 등 업무수행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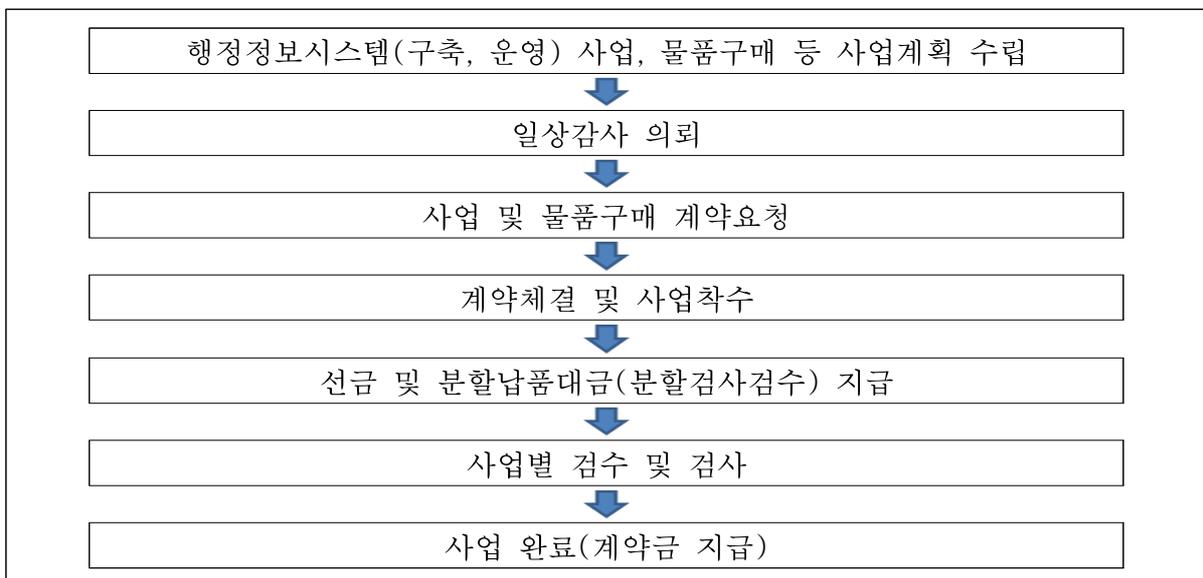
- 법령상 근거
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 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 -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-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 -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 - 「행정심판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추진경위
- 국민권익위원회 개청에 따른 권익행정 정보시스템 구성 및 운영 ('08.8.)
 -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시스템 구축('12.12.)
 -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('13. ~ '16., 전자정부지원사업)
 - 사이버 안전센터 구축 및 주간 관제 시행으로 정보보안 강화 ('17.2.~)
 - 청탁금지법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및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개통('17.7.)
 - 주간에만 시행하던 사이버 보안관제를 야간·주말까지 확대 ('19.7. ~)
 - 범정부 부패방지정보시스템(청렴포털) 구축 ('18.~'21. 전자정부지원사업)
 -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통 ('22.5.)
 - 전라북도소청심사위 등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확대·운영 ('23.1월 기준 총 79개 행심위)

6.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 사업
- 사업규모 : 5,433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일반국민, 위원회 내부직원 및 유관기관 공무원

7. 사업 집행절차



사업명
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(정보화) (1132 - 321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권익개선정책국	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2	321
명칭	국민권익증진	청렴권익행정정보화	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(정보화)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	3,713	3,112	3,112	5,780	5,780	2,668	85.7

4. 사업목적

- 모든 행정기관(중앙·지자체·교육청)과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, 제안, 토론 및 각종 신고 등 소통창구를 통합·연계한 범정부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'국민신문고' 운영 및 기능개선
- 수집된 민원정보 등 국민의 소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민원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'민원정보분석시스템' 운영 및 데이터 이용가치 제고를 위한 데이터 개방·직접분석 활용 체계 확대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법령상 근거
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기능)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
 - 「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」
- 추진경위 - 사업 시작연도, 추진배경, 부처별 중점과제, 대통령 공약사항 등
 -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로 선정('03.8.)
 -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시범시스템 구축사업('05.7.)
 -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시스템 확대 1, 2, 3단계 구축사업('06.6.~'08.2.)
 -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「국민신문고」 기능개선 및 이용 확대('08.6.~)
 - 국민신문고 외국어(영·중·일 등 14개 외국어) 민원창구 개설('08.6.~'13.10.)
 - 국민참여 플랫폼 「국민생각함」 개통('16. 3.)
 -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구축('10.~'12.11.) 및 이용기관 확대('13. 1.~)
 - 민원빅데이터 현황판 구축('18.7~12), '한눈에 보는 민원빅데이터' 개시('19.1)
 - 국민신문고 및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전면 개편('18.8. .~'19.12.)
 - 민원빅데이터 원격분석플랫폼 구축 BPR/ISP 추진('21.2~6.)
 -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구축 BPR/ISP 추진('22.4~9.)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5,780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일반국민, 중앙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등 행정기관

7. 사업 집행절차



사 업 명
반부패기술지원(ODA) (1133 - 331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청렴연수원	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3	331
명칭	국민권익증진	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	반부패기술지원(ODA)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 (B-A)	(B-A)/A
		본예산(A)	추경	정부안	확정(B)		
반부패기술지원 (ODA)	37	168	168	160	160	△8	△4.8

4. 사업목적

- 우리나라의 주요 반부패 정책 및 제도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인적·제도적 반부패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과정 등 운영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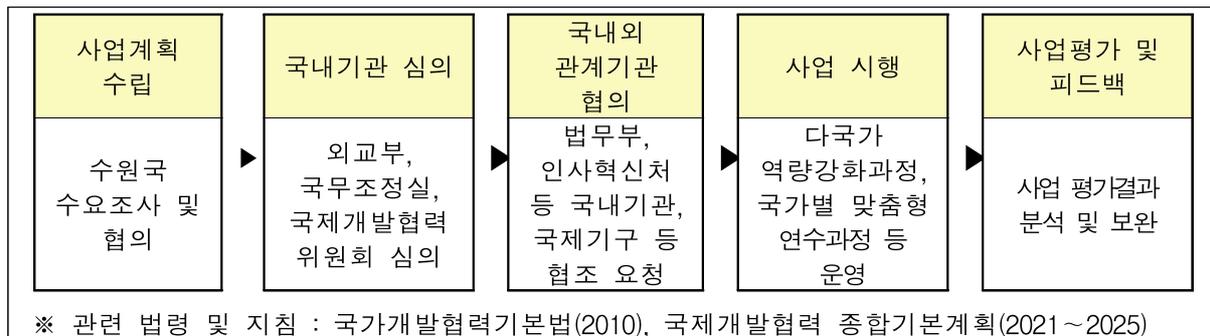
- 법령상 근거
 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호(기능) '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' 수행
 - UN반부패 협약 제6장 기술지원과 정보교환 - 제60조 '훈련과 기술지원', 제62조 '그 밖의 조치 : 경제발전과 기술지원을 통한 협약 이행'

- 추진경위
 - '06. 12월 : 한-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MOU 체결
 - '08. 3월 : UN반부패협약 비준(한국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국민권익위원회 지정)
 - ※ UN반부패협약은 타방 당사국의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이행 지원을 명시
 - '10. 2월 : 한-베트남, 한-몽골 반부패 협력 MOU 체결
 - '11. 2월 : 국민권익위-KOICA 간 기술지원 분야 협력을 위한 MOU 체결
 - '13. 6월 : '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' 개설
 - '15.12월 : 한-UNDP(유엔개발계획) 반부패 협력 MOU 체결

6.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160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청렴연수원(국민권익위원회 소속)
- 사업 수혜자 : 외국인 공직자 등

7. 사업 집행절차



사 업 명
청렴권익국제교류 (1133 - 332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기획조정실	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3	332
명칭	국민권익증진	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	청렴권익국제교류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청렴권익 국제교류	214	381	357	382	382	1	0.3

4. 사업목적

- 국제 반부패 규범 형성 및 이행관리 등 국제 반부패 논의에 능동 대응하고, 국제 반부패 공조에 적극 참여
-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적 방향 모색 등 국제 옴부즈만 기구 및 해외 옴부즈만 기관과 교류·협력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법령상 근거
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9호 (기능) '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' 수행

- OECD 뇌물방지협약('99.2월 국회 비준)
- UN 반부패협약('08.2월 국회 비준)
- 국제기구로서의 국제반부패아카데미(IACA) 설립을 위한 협정('11.11월 대통령 재가)
- 반부패·옴부즈만 협력 MOU

○ 추진경위

- 반부패 국제교류

- 아·태 지역 내 APEC 반부패·투명성 T/F 설립('05.9.)
- 한-인니 반부패 협력 MOU 체결('06.12.)
- UN반부패 협약 비준('08.3.) ※ 한국 부패방지 총괄기구로 위원회 지정
- APEC 반부패 투명성 심포지엄 및 제5차 아태 반부패 기관장 회의(ACA) 개최('09.9.)
- 한-베트남, 몽골 반부패 협력 MOU 체결('10.2.)
- G20 반부패 행동계획 채택('10.11., 서울 정상회의)
- 위원회-국제반부패아카데미(IACA) MOU 체결('12.3.)
- 국제반부패아카데미(IACA) 초대이사 당선('12.11.)
- 제7차 아·태 반부패 기관장 회의(ACA) 및 국제 반부패 포럼 개최('13.9.)
- 한-영 반부패 협력사업 추진('14.4., 영국 외무부 번영기금 활용)
- 위원회-유엔개발계획(UNDP) MOU 체결('15.12.)
- ADB/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 개최('17.11.)
- 한-튀니지('18.3.), 이라크('18.4.), 미얀마('18.5.) 반부패 협력 MOU 체결
-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4주기 점검 현장실사('18.7., 서울/세종)
- 국제반부패아카데미(IACA) 이사 당선('18.9.)
- G20 실무그룹회의 공공기관 반부패시책 장려정책 우수사례집 발간('18.10.)
- 한-국제투명성기구(TI) 국제반부패회의 개최 MOU 체결('19.5.)
- 한-쿠웨이트('19.5.), 우즈베크('19.10.) 반부패 협력 MOU 체결
-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(IACC) 개최('20.12.)
- 위원회-유엔개발계획(UNDP) MOU 연장 체결('21.12.)
- UN반부패협약 2주기 점검 방문 실사('22.10.)

- 옴부즈만 국제교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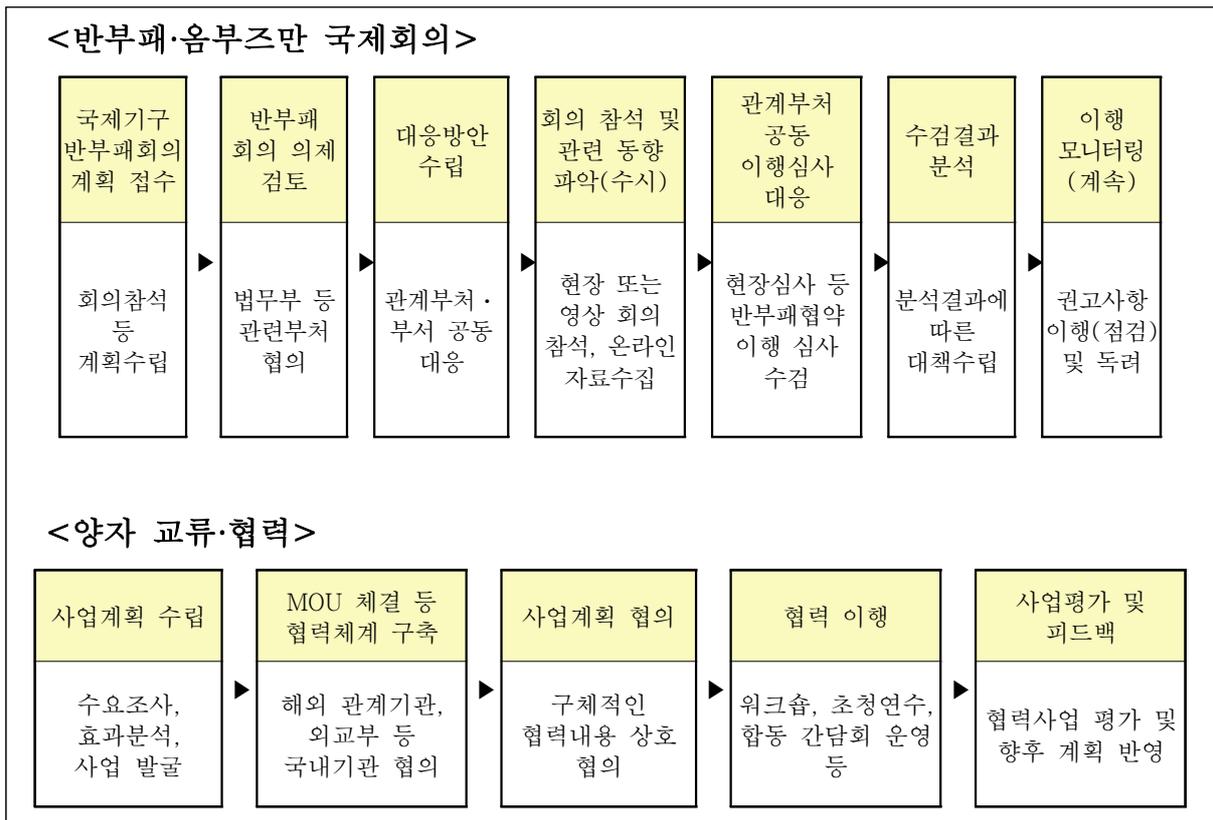
- 세계옴부즈만협회(IOI) 아시아지역 부회장 당선('09.6.)
- 한-인도네시아 옴부즈만 협력 MOU 체결 및 이행('10.2.)
- 한-태국 옴부즈만 협력 MOU 체결 및 이행('11.12.)
- 한-베트남 옴부즈만 협력 MOU 체결 및 이행('13.3.)
- 아시아옴부즈만협회(AOA) 이사회 및 세계옴부즈만협회(IOI) 아시아지역총회 등 개최('14.7.)

- 한-호주 음부즈만 MOU 체결 및 이행('15.6.)
- 세계음부즈만협회(IOI) 아시아 이사국 당선('16.11.)
- 아시아음부즈만협회(AOA) 총회 컨퍼런스 및 세계음부즈만협회(IOI) 아시아지역총회 개최('17.5.)
- 한-호주NSW주 음부즈만 협력 MOU 체결('18.11.)
- 아시아음부즈만협회(AOA) 이사 당선('19.12.)
- 세계음부즈만협회(IOI) 지역이사 당선('21.5.)
- 아시아음부즈만협회(AOA) 바쿠 국제컨퍼런스 영상 발표('22.10.)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 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 사업
- 사업규모 : 382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 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재외국민, 해외주재 기업 등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 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

사 업 명
청렴권익민간협력 (1133 - 333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기획조정실	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3	333
명칭	국민권익증진	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	청렴권익민간협력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○		90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청렴권익민간협력	502	672	672	672	672	-	-

4. 사업목적

- 민간단체 등과의 간담회, 토론회 등을 통한 소통·협력 활성화, 공공기관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 지원, 청렴정책 모니터링, 민간경상보조사업 등
-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조성·정착 지원을 위한 「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」 발간·배포,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등 협력
-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축·운영
- 공기업 등이 청렴윤리경영을 자율 실천할 수 있도록 '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(K-CP)' 마련 및 배포 등 추진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○ 법령상 근거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공공기관의 책무), 제5조(기업의 의무), 제6조(국민의 의무), 제12조(기능) 8호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(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)
- 「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」 제3조(기본방향)
- 「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국무총리훈령)

○ 추진경위

- 시민협력

• 민간보조사업(공모) 추진('07년~)

- ※ '07년(10개 사업, 120백만원) → '08년(9개 사업, 120백만원) → '09년(5개 사업, 120백만원) → '10년(4개 사업, 120백만원) → '11년(6개 사업, 90백만원) → '12, '13년(23개 사업, 341백만원) → '14년(21개 사업, 305백만원) → '15년(16개 사업, 244백만원) → '16년(13개 사업, 209백만원) → '17년(10개 사업, 188백만원) → '18년(8개 사업, 169백만원) → '19년(9개 사업, 199백만원) → '20년(12개 사업, 189백만원) → '21년(11개 사업, 189백만원) → '22년(9개 사업, 189백만원)

• 민간단체 토론회 및 심포지엄, 실무협의, 간담회 등 개최('07년~)

• 공공기관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지원('10년~)

•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'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' 구축·운영('14년~)

- ※ 장애인, 다문화가정, 아동·청소년, 여성, 안전·소비자, 사회복지 등 6개 분야 19개 단체

• 청렴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('19년~)

-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

• 국내외 최신 윤리경영 정보 월간 웹진 「기업윤리 브리프스」 제작·배포('05년~)

• 기업 윤리경영 관련 전문자료 발간·보급('07년~)

- ※ ('07년) 기업 윤리경영 모델 → ('08년) 기업 투명성 자기진단 모델 → ('09년) 윤리경영 보고서 표준안 → ('10년) 기업 윤리경영 모델 → ('12년) 산업별 기업 윤리경영 모델 → ('16년) 기업 윤리경영 체계 수립 가이드스 → ('17년) 부패방지경영시스템(ISO37001) 가이드북 → ('19년, '20년) 공기업 청렴경영 성공 실패 사례집

•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 개발('09.8, '11.7) 및 교육과정 운영('09년~'21년)

- ※ ('09년) 1회 → ('10년) 2회 → ('11년) 5회 → ('12년) 6회 → ('13년) 10회 → ('14년) 14회 → ('15년) 13회 → ('16년) 19회 → ('17년) 15회 → ('18년) 19회 → ('19년) 16회 → ('20년) 9회 → ('21년) 23회

-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

• 반부패 민·관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축·운영('18년~)

- *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 구성원과 정부가 소통·협력하여 국정을 조화롭게 수행하는 것

•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논의 구조 간소화 운영('20년 2월~)

- ※ 기존 3단계(민관협의회-실무협의회-전문분과)에서 2단계(민관협의회-실무협의회)로 구조 간소화

-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

• 국제투명성기구 '21년 국가청렴도(CPI) 발표('22년 1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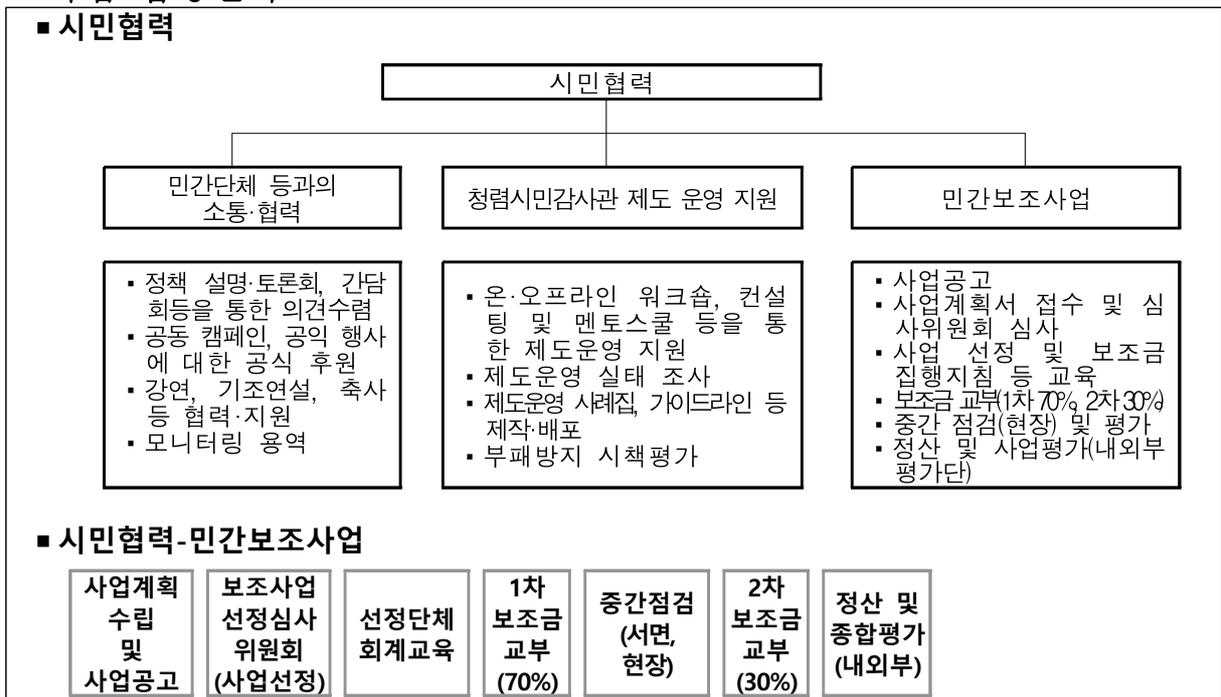
- ※ 우리나라 국가청렴도는 32위로 '16년 대비 20단계 상승하였으나, 경영활동 관련 부문은 5년간
 담보상태(5년간 '경영활동 관련 부패(IHS Markit)' 59점, '공적자금 유용·계약 등 뇌물관행(EIU)' 55점)
- 제도 도입 방향을 위한 정책간담회('21.3.~'22.5., 7회), 공개토론회('21.12.)
 - 공공기관용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배포('22.6)
 - 20개 공공기관 대상 청렴윤리경영 CP 시범운영 실시('22.8.~)

6.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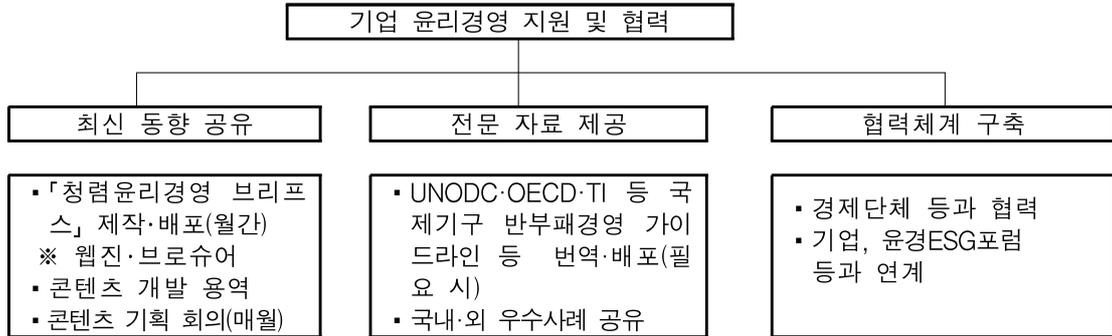
- 총사업비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사업
- 사업규모 : 672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, 민간경상보조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국민, 시민사회단체, 기업 등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내역사업명	구분	피보조· 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금액 (2022예산)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반부패·권익 증진확산프 로그램 공모	보조	비영리 민간단체	189	90	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8호 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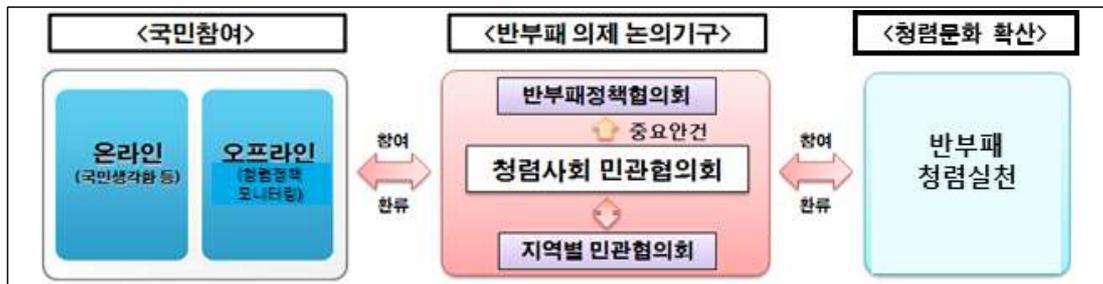
7. 사업 집행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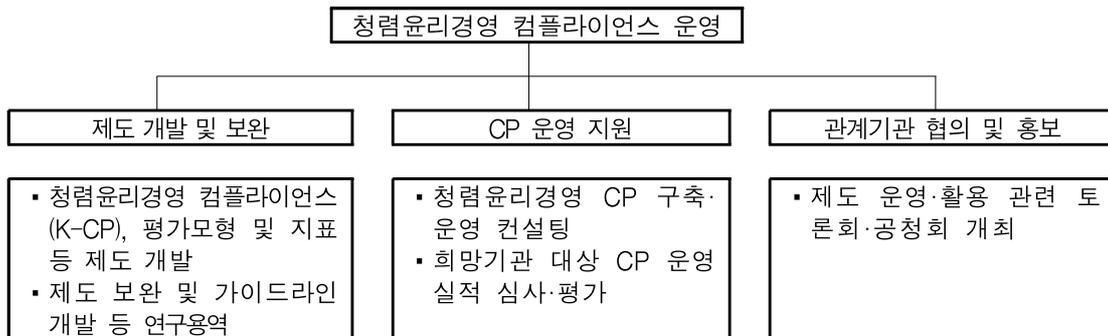
■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



■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



■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



사 업 명
부패·고충제도개선 (1134 - 34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권익개선정책국		010	016
명칭					일반 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4	340
명칭	국민권익증진	부패·고충제도개선 및 국민소통활성화	부패·고충제도개선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 (B-A)	(B-A)/A
		본예산(A)	추경	정부안	확정(B)		
부패·고충제도개선	65	97	97	97	97	-	-

4. 사업목적

- 고충민원을 유발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·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·제도, 구조적·고질적인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권고함으로써 권익침해·부패유발 요인의 근원적 해소
-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운영을 통해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,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극행정을 예방·근절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법령상 근거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(제도개선의 권고), 제47조(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), 제52조(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·점검)

제27조(제도개선의 권고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.

제47조(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)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·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.

제52조(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·점검)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

-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8조의2(적극행정국민신청), 제18조의3(소극행정 신고), 제20조(소극행정 예방 지원)
- *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7조의2(적극행정국민신청), 제17조의3(소극행정 신고), 제19조(소극행정 예방 지원)

제18조의2(적극행정국민신청) 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(이하 “적극행정국민신청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1.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[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)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]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
2. 「국민 제안 규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

② 적극행정국민신청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해야 한다.

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.

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.

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방법·절차·처리기준, 처리결과 통보, 사후관리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.

제18조의3(소극행정 신고)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,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,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.

제20조(소극행정 예방 지원) ① 인사혁신처장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취한 조치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인사혁신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극행정의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자문하거나 상담,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.

○ 추진경위

〈부패방지 제도개선〉

- 부패방지 제도개선은 「부패방지법」 시행('02.1.25.)에 따라 '02년부터 추진
- 부패방지 현안보고(대통령, '03.11.3.)
 - 부패척결을 위한 포괄적인 개선책과 함께 정확한 실태진단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·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추진 필요(대통령 강조사항)
-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('03.11.18.)
 - 1차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실시('03.11.24.~'04.2.17.)
 - 1차 실태조사결과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보고(대통령, '04.2.18.)
-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('02년~현재)

〈고충예방 제도개선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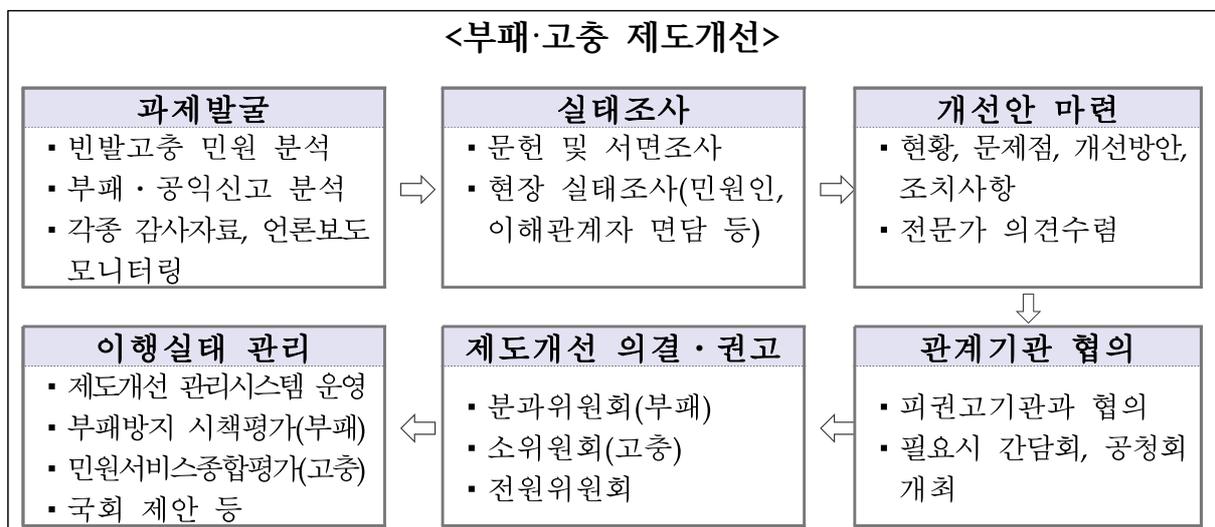
- 고충예방 제도개선은 「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시행('05.10.30.)에 따라 '05년부터 추진

- 제도개선 총괄부서(고충위 제도개선팀) 신설('05.9월)
 -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('05년~현재)
 - 직제개편('09.5.13.)에 따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소속 제도개선기획담당관·제도개선담당관 2개 부서로 소속·명칭 변경 및 제도개선업무 통합
 -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 제도개선 사업통합을 위한 직제개편('10.2.9.)에 따라 '제도개선 사업'으로 변경, 사무처장 직속 권익제도기획관(총괄·경제·사회제도개선담당관, 3개과)에서 사업 수행
 - 직제개편('13.3.23.)에 따라 권익제도기획관이 기획조정실 내 민원분석심의관과 통합하여 권익개선정책국이 신설, 권익개선정책국 내 총괄·경제·사회제도개선과로 변경
- <적극·소극행정 운영>
-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개정·시행('21.7.27.)에 따라 '21년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및 소극행정 재신고제도 도입·운영
 - 적극행정TF 운영('21.7.27~)을 거쳐, 직제개정('22.2.22)을 통해 권익개선정책국 내 적극행정팀 신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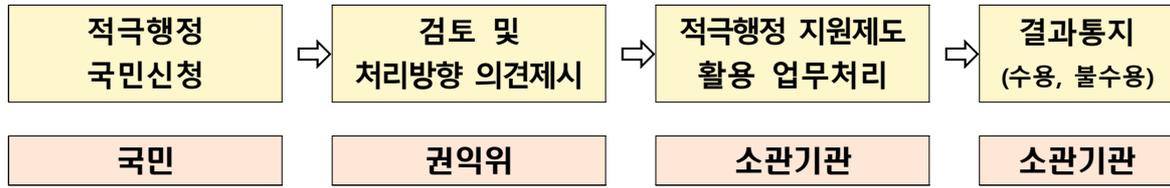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-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97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국민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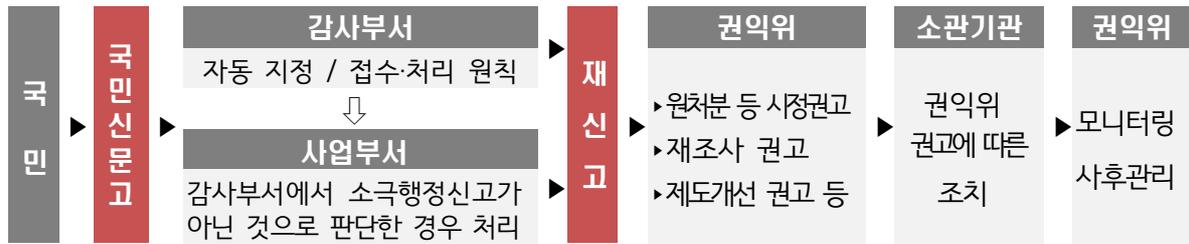
7. 사업 집행절차



<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>



<소극행정 신고·재신고 제도>



사 업 명
종합상담창구운영 (1134 - 341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정부합동민원센터		010	016
명칭					일반 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4	341
명칭	국민권익증진	부패·고충제도개선 및 국민소통활성화	종합상담창구운영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종합상담창구운영	10,267	11,169	11,169	11,547	11,547	378	3.4

4. 사업목적

- 국민들이 각종 행정 및 생활 관련 민원을 상담하고 고충민원 및 국민제안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
- 국민이 단일 전화번호(☎110)로 정부민원을 상담·안내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구축한 정부대표콜센터의 효과적 운영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법령상 근거
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- 제12조(기능) 15.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·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·지도
- 제12조(기능) 16.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·운영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 - 제11조(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및 24조(전문상담위원의 위촉)
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(민원실)
- 「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용규정」(국민권익위원회 훈령) 제6조(실비보상)

○ 추진경위

< 국민콜110(정부민원안내) 운영 >

- 제1콜센터 개소(전국서비스 개시) : '07. 5. 10.
- 전화상담 대행(ASP) : 행안부·통계청·국세청('07), 여가부('11), 법무부('12)
- 콜센터 통합상담서비스 개시 : 경찰청('09), 식약처·보훈처('10)
- 110 온라인(화상·채팅·SNS) 상담서비스 개시 : '11. 11.
- 110 공공행정기관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개시 : '12. 6.
- 수도권 소재 11개 정부콜센터 과천청사 통합·이전 : '13. 8.
- 정부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 확정(국가정책조정회의) : '14. 3.
- 정부콜센터 대표번호 110 단일화 출범 기념식(4개 기관 110번 통합상담) : '14. 8.
 - * 4개 기관 : 해수부, 농식품부, 교육부, 권익위
- '110정부민원콜센터 앱' 업그레이드 및 모바일서비스 개시 : '14. 12.
- 안전관련 신고전화의 119·112·110 통합방안 확정(안전정책조정회의) : '15. 1.
- 5개 기관 대표번호 110번 단일화 상담개시 : '15. 6.
 - * 5개 기관 : 인사혁신처, 행안부, 보훈처, 식약처, 통계청
- 4개 기관 콜센터 대표번호 110번 연계 상담개시 : '15. 12.
 - * 4개 기관 : 과기부, 외교부, 국토부, 기상청
- 비긴급 신고전화 처리를 위한 제2콜센터 개소 및 시범운영 개시 : '16. 7. 1.
- 비긴급 신고전화 상담콜센터(제2콜센터) 개소 및 정식서비스 개시 : '16.10.28.
- 3개 기관 콜센터 대표번호 110번 연계 상담개시 : '16. 12.
 - * 3개 기관 : 법무부, 복지부, 관세청
- 경찰(112), 소방(119), 권익위(110) 간 신고전화 연계체계 구축 : '17. 10.
 - * 전화 및 신고(상담)내용 실시간 전달·공유체계 구축
- 공정위 대표번호 110번 단일화 상담개시 : '18. 1.
- 비긴급 기관의 시스템 통합 및 콜센터 연계체계 구축 : '18. 2.

- * 통합(1개) : 여가부(1366), 연계(2개) : 경찰청(182) 및 한국전력공사(123)
- 공정위 종합상담실, 상담시스템 통합구축 및 운영 : '18. 3.
- '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'(예규) 시행 : '18. 10.
 - * 특정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및 담당자 교체, 폭언·성희롱에 대한 고소·고발 등
- 114에 공공기관의 대표번호 문의시 110으로 안내 시행 : '18. 10.
 - * 문체부·농진청 관련 상담은 110에서 우선 실시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(1·2콜센터) 통합 운영위탁 용역계약 체결 : '19. 4.
- 카카오톡 '국민콜110' 일반 및 갑질피해 채팅상담 개시 : '19. 7.
- 제2콜센터(영등포)의 과천청사로 통합이전 추진 : '19. 10.
- 문체부 대표번호 110번 단일화 상담개시 : '19. 11.

<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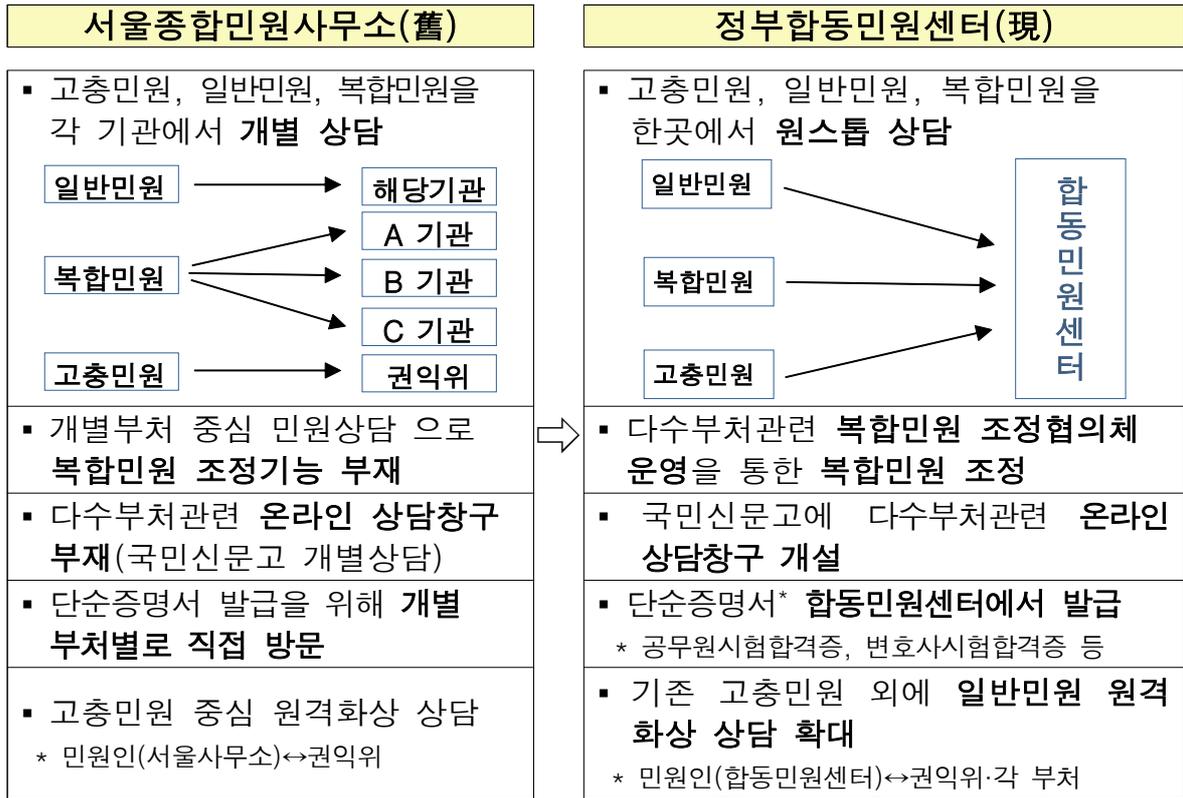
- 국무총리 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: '94. 4. 8.
- 총무처(현 행정자치부) 소속 정부합동민원실로부터 업무 이관 : '96. 12. 31.
-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속 변경(국무총리 → 대통령) : '05. 10. 30.
- 국민권익위원회 통합·출범 : '08. 2. 29.
 - 서울, 대전, 부산 등 11개 지역상담센터 운영 : '08. ~ '13. 12.
-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출범 : '14. 12. 15.
 - 서울을 제외한 10개 지역상담센터 폐지 : '13. 12.
 - 2개(서울 및 세종)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: '14. 12. 15. ~
-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 정부합동민원센터 출범 : '19. 10. 1.~
 -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으로 이전해 확대 개편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 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11,547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일반국민, 공무원 등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 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<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>



< 국민콜110 운영 >

□ 국민콜110 상담업무 처리절차

- 국민콜110은 일반민원(정형·반복)을 상담·안내 후 전문상담이 필요시 해당 기관의 콜센터로 연결 처리(1차 상담·안내)
- 각 기관 콜센터는 전문민원(전문·복합)을 상담 처리(2차 상담)



사 업 명
고충민원조사활동 (1135 - 35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 위원회	고충처리국	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5	350
명칭	국민권익증진	국민고충해소	고충민원조사활동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고충민원 조사활동	1,506	1,331	1,331	1,331	1,331	-	-

4. 사업목적

- (고충민원 조사활동 지원) 행정기관 등의 위법·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나 불편 사항을 조사·처리하여 국민권익을 구제
- (집단민원 중점관리)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여러 기관과 연관되고, 복잡하여 해결이 어려운 집단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
- (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) 민원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, 주거 취약계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'달리는 국민신문고'를 운영하여 민원서비스 향상

- (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·운영 활성화 지원)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활성화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·운영을 지원
- (행정기관등 민원처리실태 확인·지도) 지방자치단체, 교육청 등에 대한 '민원 서비스 종합평가'를 통해 민원 행정 서비스 수준을 제고
- (고충민원 전문교육 및 역량강화) 고충민원 담당 조사관 대상 전문교육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권익 증진을 도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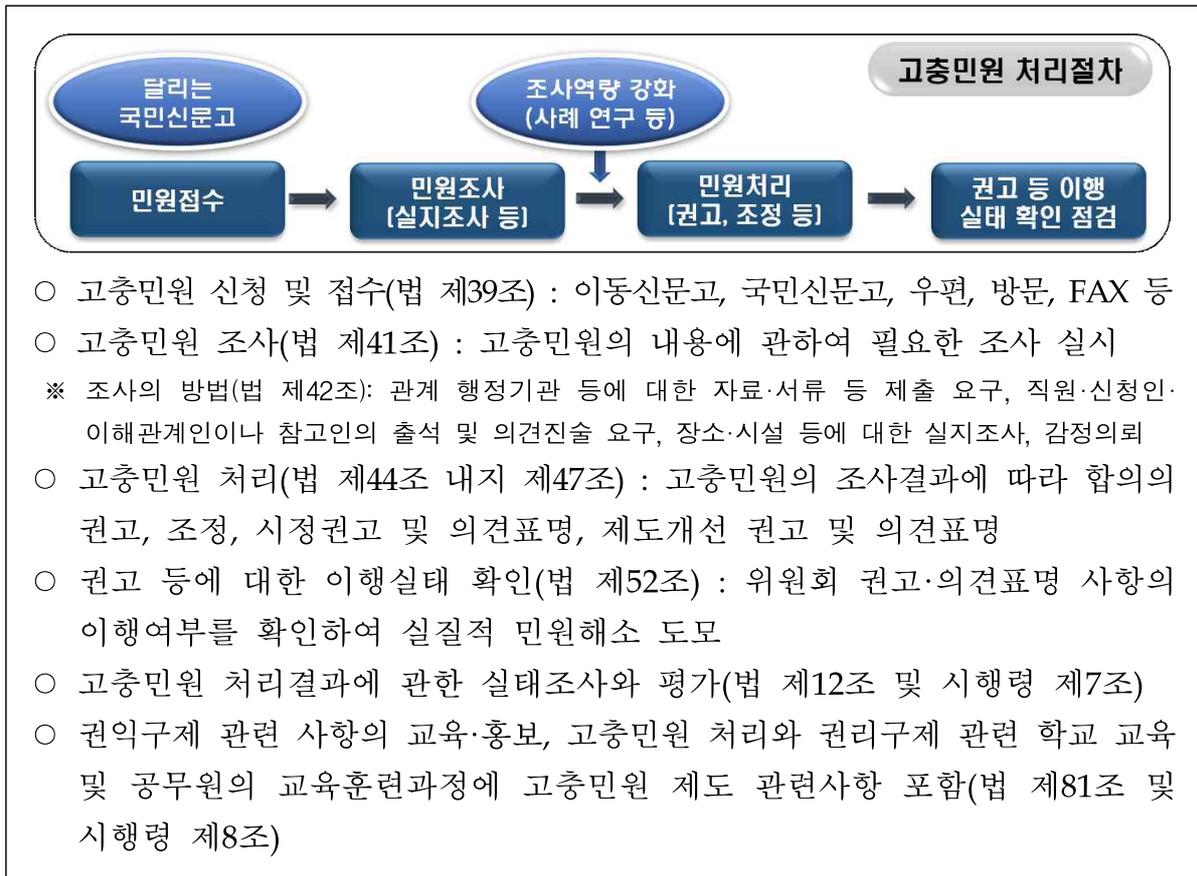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법령상 근거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 - 제12조(기능)
 1. 국민의 권리보호·권익구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
 2.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
 4.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
 7. 권익구제 교육·홍보계획의 수립·시행
 15.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·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·지도
 17.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·지원 및 교육
 18. 다수인 관련 갈등사항에 대한 중재·조정, 기업고충민원의 조사·처리 등
 - 제41조(고충민원의 조사) 및 제52조(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·점검)
 - 제54조(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) 제2항
 - 제81조(교육과 홍보 등)
- 추진경위
 - '94. 4. 8.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(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)
 - '05. 10. 30.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(「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)
 - '08. 2. 29. 국민권익위원회 설치(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)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: 해당없음
- 사업기간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: 1,331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: 일반국민

7. 사업 집행절차



사업명
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(1136 - 36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 위원회	부패방지국		010	016
명칭					일반 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6	360
명칭	국민권익증진	반부패청렴정책강화	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	2,425	2,522	2,507	2,644	2,644	122	4.8

4. 사업목적

-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 진단, 반부패·청렴시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각급 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
- 공직사회와 우리사회 전반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조사
-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·평가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·정비
- 구조적·고질적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사례와 문제점 등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○ 법령상 근거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27조의2, 제28조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 및 제30조
-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11조 제6항

○ 추진경위

- 「부패방지법」 제정 : 2001. 7. 24.
- 부패방지위원회 설립 : 2002. 1. 25.
- 부패방지조사평가사업 시작 : 2002. 1. 25.
- 부패발생의 본질적 원인 분석과 제거를 위한 부패유발요인 분석·검토의 도입 필요성 강조(제1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시 대통령) : 2004. 2.
- 부패유발요인 분석제도 도입·운영 근거 법제화(「부패방지법」 개정) : 2005. 7. 21.
-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·시행 : 2006. 4.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정 및 시행 : 2008. 2. 29.
- 부패영향평가지침 제정 : 2008. 6.
- 입법과정에서의 부패영향평가 명문화 : 2009. 6.
-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·평가 명문화 : 2016. 3.
- 청렴컨설팅 제도 명문화 : 2016. 3.
-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·공단 사규에 대한 직권 부패영향평가 도입 : 2019. 10.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-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2,644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정부기관, 일반국민 등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□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

< 평가 체계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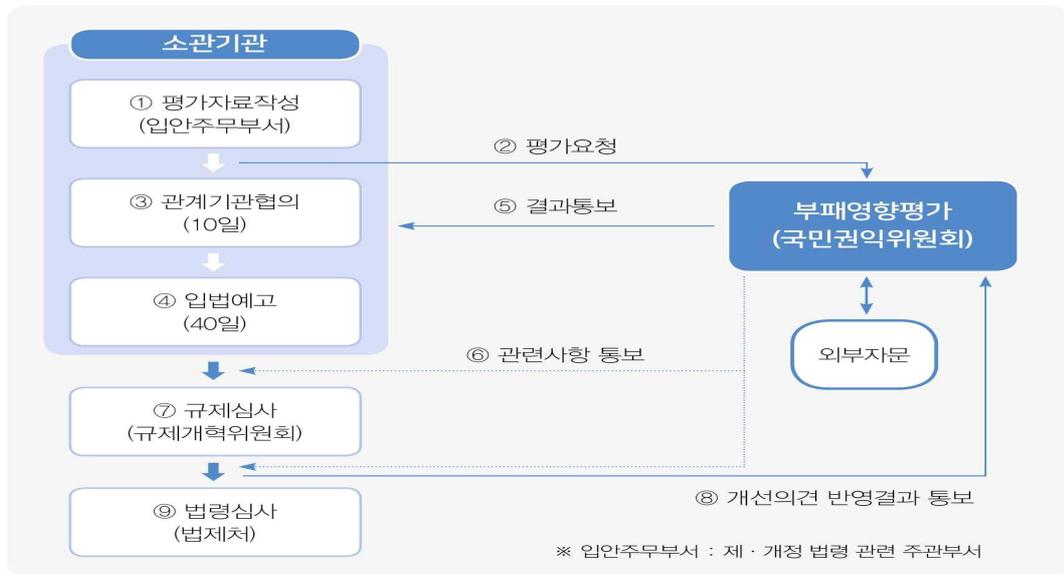
< 추진 절차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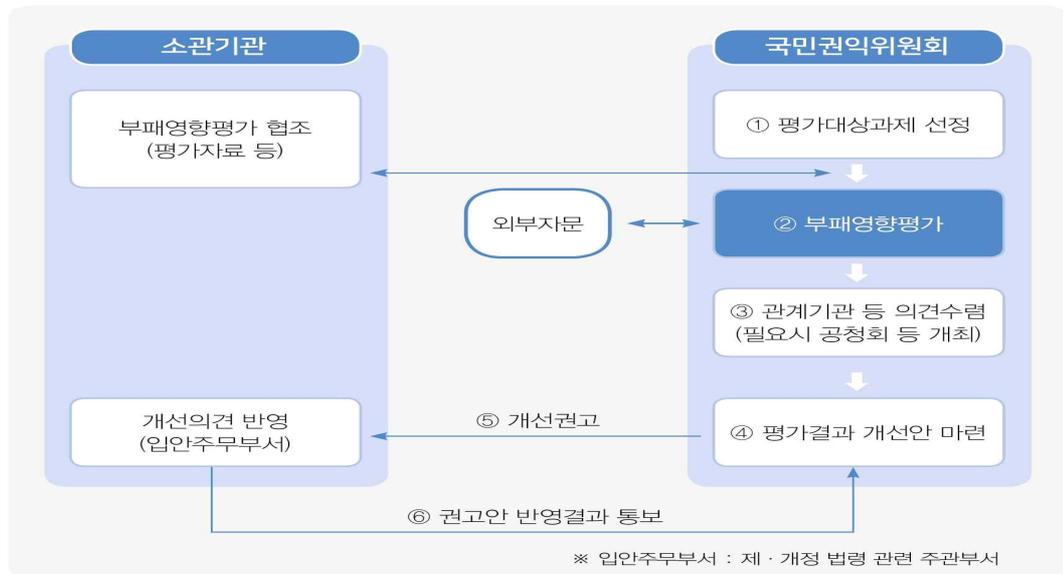
□ 부패영향평가

- 개념 : 법령을 분석·평가하여 그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발굴·개선
- 평가항목 : 4개 분야 및 12개 세부평가항목
 - ① 준수 : 준수부담의 합리성, 제재규정의 적정성, 특혜발생 가능성
 - ② 집행 : 재량규정의 구체성·객관성, 위탁·대행의 투명성·책임성, 재정누수 가능성
 - ③ 행정절차 : 접근의 용이성, 공개성, 예측가능성
 - ④ 부패통제 : 이해충돌가능성,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, 소극행정 유발가능성

< 제·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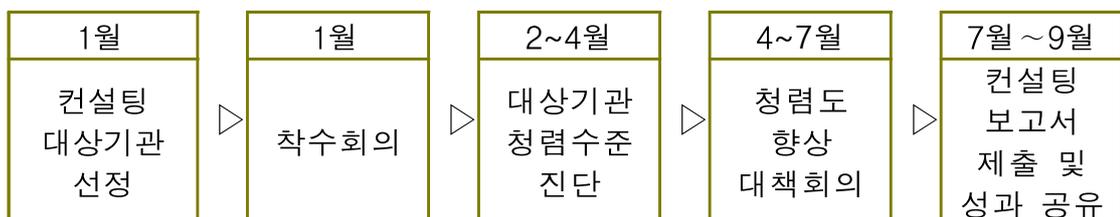
<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>



□ 청렴컨설팅

- 청렴도가 낮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수준과 역량, 부패취약요인을 진단하고,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대안을 종합 제공해 청렴도 향상을 촉진·지원

< 청렴컨설팅 추진 절차 >



사 업 명
청렴교육및의식확산 (1136 - 361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청렴연수원		010	016
명칭					일반 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6	361
명칭	국민권익증진	반부패청렴정책강화	청렴교육및의식확산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청렴교육및의식확산	2,010	2,622	2,592	2,152	2,152	△470	△17.9

4. 사업목적

-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의무화에 따라 양질의 반부패·청렴 교육 실시를 위한 청렴연수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시설 관리
-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청렴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법령상 근거
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81조의2
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8조의2
 - 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4조의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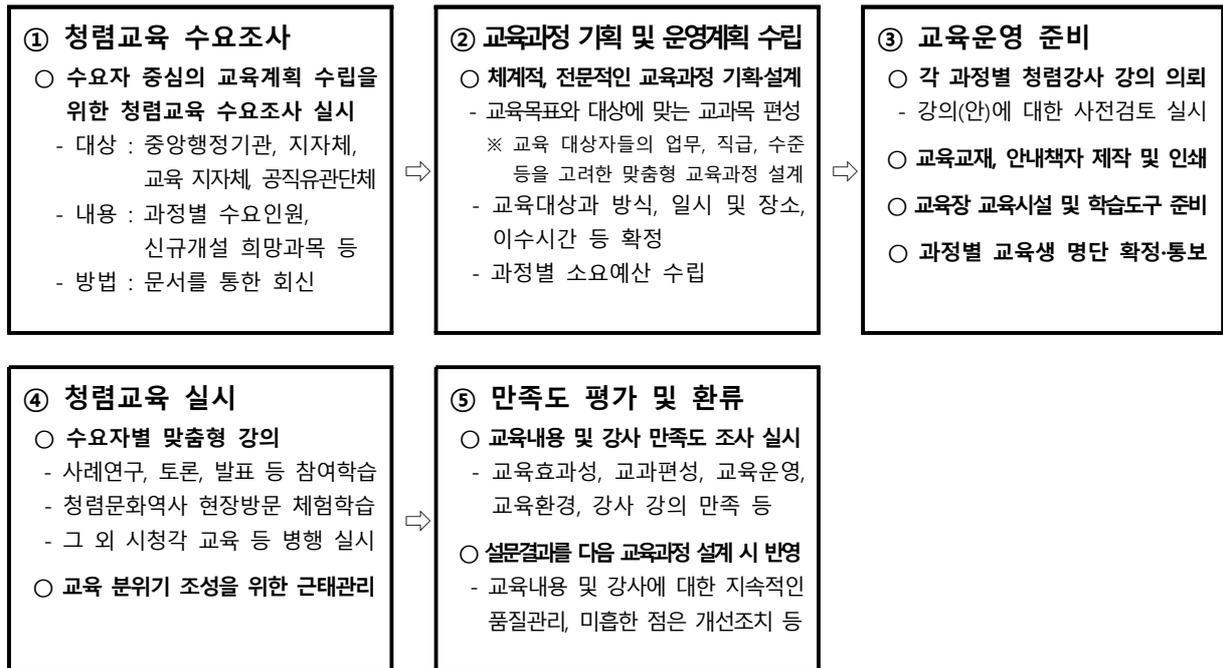
○ 추진경위

- 2003. 1월 부패방지위원회('02.1월 출범) 반부패·청렴교육사업 시작
- 2007. 3월 청렴교육관 개관 및 운영 개시
- 2012.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 출범
- 2012. 11월 「공무원교육훈련기본법」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
- 2014. 7월 청렴연수원 숙소동 준공
- 2016. 9월 「청탁금지법」 등 제·개정으로 공공기관 부패방지 교육 의무화
- 2019. 9월 일반국민 대상 청렴교육 실시(국민 참여예산)
- 2022. 5월 「이해충돌방지법」 시행으로 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 교육 의무화

6.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2,152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
- 사업 수혜자 : 공직자, 학생, 일반국민

7. 사업 집행절차



사 업 명
공직자행동강령운영 (1136 - 363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부패방지국		010	016
명칭					일반 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6	363
명칭	국민권익증진	반부패청렴정책강화	공직자행동강령운영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공직자행동강령운영	82	90	90	94	94	4	4.4

4. 사업목적

-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의 지속적 보완·발전방안 연구 및 각급 기관의 자율적 행동강령 운영 지원을 통한 청렴기반 조성
-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처리 및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·이행점검을 통한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법령상 근거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, 제9조, 제10조
- 「공무원 행동강령」,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

○ 추진경위

- 부패방지법 제정(2001.7.), 동법 시행령 제정(2001.11.)
-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(2003.5.)
-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권고안 시행(2004.9.)
- 부패방지법 개정(2005.7.), 동법 시행령 개정(2005.12.)
-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(2005.12.)
 - ※ 위반행위 신고창구 확대, 알선·청탁 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 등 보완
-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제·개정 지침 시행(2006.4.)
-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시행(2006.12.)
- 부패방지법 개정(2007.8.), 동법 시행령 개정(2007.12.)
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, 동법 시행령 제정(2008.2.)
-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(2008.2.)
 - ※ 종교 편향 금지 추가
-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(2008.11.)
 - ※ 직무관련자 범위 확대, 이해관계 직무범위 확대 등
-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(2008.12.)
 - ※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규정 신설,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확대 등
-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(2010.11.2.), 시행(2011.2.3.)
-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(2012.2.29., 2014.6.30., 2016.9.26.)
-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(2016.9.27.),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(2016.9.27.)
 - ※ 청탁금지법 시행(2016.9.28.)
-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(2018.1.16.), 시행(2018.4.17.)
 - ※ 고위공직자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,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, 가족 채용 제한, 수의계약 체결 제한, 퇴직자 사전 접촉의 신고, 민간부문 청탁 금지 등
-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(2018.2.28.), 시행(2018.4.17.)
-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(2018.12.24.)
 - ※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,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
-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(2018.12.24.), 시행(2019.3.25.)
-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(2019.1.8., 2019.10.7.)
-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(2020.4.7.), 시행(2020.5.27.)
 - ※ 청탁금지법 개정(2020.5.27.)
-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(2020.4.7.), 시행(2020.5.27.)
-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(2020.4.6.)
-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·시행(2020.5.11.)

-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·시행(2022.1.5.)
- 공무원 행동강령,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·시행(2022.6.2.)
 - ※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규정 삭제 등(사적 이해관계의 신고, 가족 채용 제한 등)
-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·시행(2022.6.13.)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 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94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공직자, 일반국민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 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□ 주요업무

-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
-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수립·시행
-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의 심사·관리 및 운영지원
- 행동강령 교육·홍보 및 각급 기관 행동강령 운영지원

□ 행동강령 운영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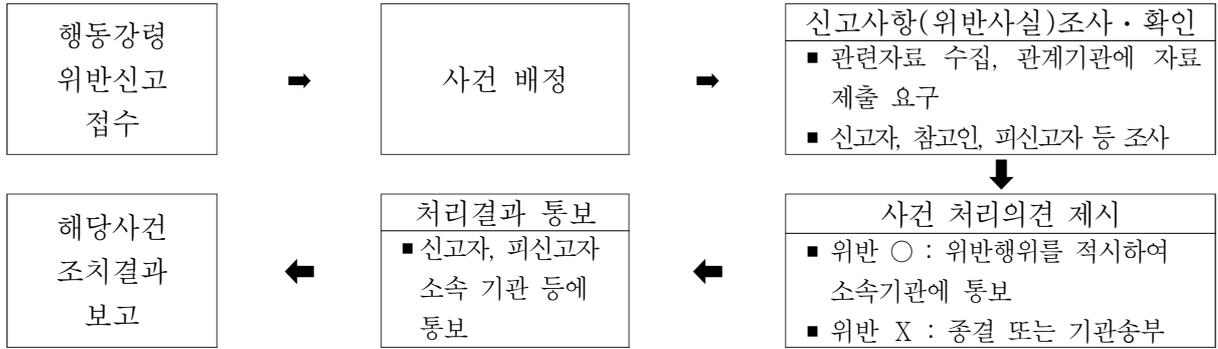


□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건 처리

○ 주요업무

-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된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건처리
- 행동강령 운영·이행 실태 점검 과정에서 인지된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건처리

○ 업무흐름도



□ 행동강령 운영·이행 실태 점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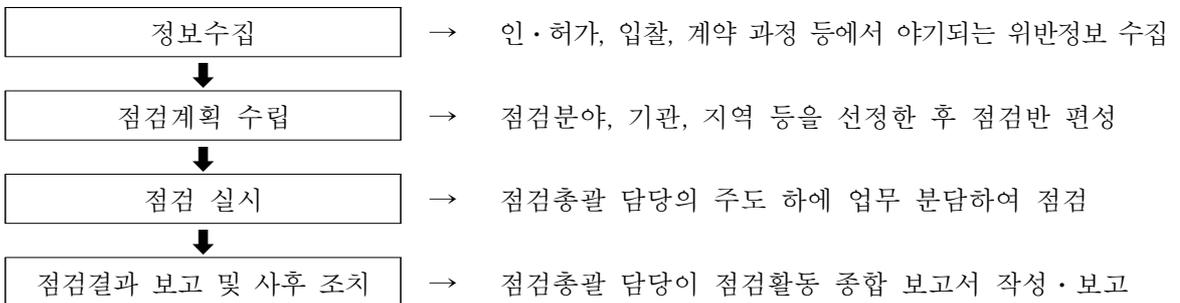
○ 점검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

○ 인·허가, 지도·단속 등 부패 취약분야 공직자 및 고위공직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

○ 점검사항

운 영 실 태	이 행 실 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행동강령 교육, 자체 점검 등 전반적인 운영현황 ○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상 애로사항 및 의견수집 ○ 기관별 행동강령 수범사례 발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 행위 ○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행위 ○ 경조사 통지 위반 행위 ○ 외부강의등의 신고 위반 및 초과사례금 수수 행위 등

○ 업무흐름도



사 업 명
부패신고자보호보상 (1136 - 364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심사보호국		010	016
명칭					일반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6	364
명칭	국민권익증진	반부패청렴정책강화	부패신고자보호보상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부패신고자보호보상	3,540	2,682	2,682	2,832	2,832	150	5.6

4. 사업목적

-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·보상을 통한 신고 활성화 도모와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에 기여
- 합리적인 보상금·포상금·구조금 지급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참여와 관심 제고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법령상 근거
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62조~제71조
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5조~제82조, 88조의3
- 추진경위
 -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해 2001년 「부패방지법」 제정을 통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도입·시행

<사업 추진 경과>

- 「부패방지법」 제정·공포(2001.7.24.) :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사업 개시(2002.1.25.)
- 「부패방지법」 일부개정(2005.7.21.) : 보상금 지급요건 완화 및 포상금지급제도 도입 등
- 「부패방지법 시행령」 일부개정(2005.12.30.) : 보상금 한도액 상향조정(2억원→20억원) 등
- 「부패방지법」 일부개정(2007.8.3.) : 민간인 신고자 보호기능 강화 등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정·공포(2008.2.29.)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(2009.5.28.) : 포상금 한도액 상향조정(5천만원 → 1억원)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(2015.10.20.) : 포상금 한도액 상향조정(1억원 → 2억원), 보상금 한도액 상향조정(20억원 → 30억원)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(2019.10.17. 시행) :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(위원회, 소속감독기관에 신고→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, 수사기관에 고소·고발한 경우도 포함),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제도 도입,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,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처벌수준 강화 등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(2020.6.11. 시행) :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상향(3년→5년, 3천만원→5천만원),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처벌수준 강화 등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 일부개정(2022.7.5., 7.19. 시행) : 구조금 지급 사유 확대, 긴급 구조금 신설, 포상금 중복지급 금지 규정 신설, 포상금 한도액 상향조정(2억원 → 5억원) 등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 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2,832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국민, 부패행위 신고자 등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 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○ 신고자 보상·포상·구조금 지급	
처리절차	처 리 내 용
보상·구조금 지급 신청 및 포상금 추천 발굴	- 신고자가 위원회에 보상·구조금의 지급 신청 -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및 발굴
↓	
보상·포상·구조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·확인	- 보상·포상·구조금의 지급 요건, 지급 사유 등 조사·확인
↓	
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	- 보상·포상·구조금의 지급 요건,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 심의·의결
↓	
전원위원회의 지급 결정	- 보상·포상·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결정
↓	
보상·포상·구조금 지급	- 보상·포상·구조금 결정서 정보, 결정통지서 신고자에게 송부 및 보상·포상·구조금 지급
○ 신고자 보호 업무	
처리절차	처 리 내 용
보호신청 접수	- 신청서 접수·처리부 등록 (신분보장등조치,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, 신변보호, 책임감면) * 부패신고자에 대한 위원회의 책임감면 요구권 '22.7.5.부터 도입·시행
↓	
조사 및 확인	- 신청인·피신청인·참고인등 조사, 관련자료 제출 요구
↓	
위원회 심의·의결	1. 인용 - (신분보장)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조치 취소 요구 등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- (비밀보장) 비밀보장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, 고발 - (신변보호) 경찰청, 지방경찰청,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 (*긴급한 경우 위원회 사후보고) - (책임감면)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책임감면 요구 2. 기각 : 신청인의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등 3. 각하 :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
↓	
처리결과 통지 (위원회→신고자)	- 결정서 정보 첨부 -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의 경우 30일 이내 행정소송 미제기 시 확정

사 업 명
공익신고제도운영 (1136 - 365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심사보호국	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6	365
명칭	국민권익증진	반부패청렴정책강화	공익신고제도운영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공익신고제도운영	1,077	2,083	2,083	1,923	1,923	△160	△7.7

4. 사업목적

-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·안전·환경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규제함으로써 사회신뢰 기반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
-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·지원을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내부 신고자 인식 전환 등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공감대 확산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
- 각급 공익신고기관에 대한 지속적 교육 및 협업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기반 마련 지원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법령상 근거
 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4조(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), 제26조, 제26조의2, 제27조
- 추진경위
 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정·공포('11.3.29.), 시행('11.9.30.)
 - 생활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 및 보호범위 확대 등을 위한 개정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시행('16.1.25.)
 - ※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,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'내부 공익신고자'로 제한,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등
 -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한 개정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시행('18.5.1.)
 - ※ 공익신고 대상분야 및 법률(5개) 확대,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, 긴급 구조금 제도,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, 보호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등
 - 신고자 신분 유출 차단 강화 등을 위한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시행('18.10.18.)
 - ※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,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상향(2천만원 → 3천만원)하고 이행시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이행강제금 강화
 -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(284개→467개)를 위한 개정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시행('20.11.20.)
 - 신고자 보호·보상 강화를 위한 개정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공포('21.4.20.)
 - ※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(467개→471개, '21.4.20. 시행), 공익신고 관련 재판에 위원회의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 신설('21.7.21. 시행), 시행령에 규정된 공익신고 송부·종결 근거의 법률 상향,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, 보상금 신청기간 연장(2→3년), 포상금 환수규정 신설 등('21.10.21. 시행)
 - ※ 대상법률: ('11.9.30) 180개 → ('16.1.25) 279개 → ('18.5.1) 284개 → ('20.11.20) 467개 → ('21.4.20) 471개
 -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('22.1월)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 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1,923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국민, 공익신고자 등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 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처리절차	처리내용
<p>신고 접수 (신고자→위원회)</p>	<p>- 신고방법 : 방문, 우편, 인터넷, 팩시밀리 *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미접수</p>
<p>↓</p> <p>신고 심사 (위원회)</p>	<p>- 심사내용 :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등 - 심사방법 : 신고자 등의 출석의견진술 요구, 출장 확인,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협조요청</p>
<p>↓</p> <p>신고사항 처리 (위원회)</p> <p>* 60일 이내, 필요시 30일 연장 가능</p>	<p>1. 이첩 - 지도·감독·규제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거나,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(법 제9조제3항, 시행령 제9조)</p> <p>2. 송부 - 이첩 또는 종결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(법 제9조제3항, 시행령 제10조)</p> <p>3. 종결 -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,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, 보완요청에 대해 2회 이상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등 (법 제10조제2항)</p>
<p>↓</p> <p>처리결과 통지 (조사·수사기관→위원회)</p>	<p>- 이첩·송부·종결 등의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(이첩·송부의 경우 보호·보상제도 안내)</p>
<p>↓</p> <p>조사·수사결과 통보 (조사·수사기관→위원회)</p>	<p>- 이첩·송부받은 조사·수사기관은 조사·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(법 제9조제5항)</p>
<p>↓</p> <p>조사·수사결과 통지 (위원회→신고자)</p>	<p>- 조사·수사결과에 대한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</p>
<p>↓</p> <p>조사·수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(위원회→조사·수사기관)</p>	<p>- 재조사·재수사 요구 (위원회 직권, 신고자 이의신청)</p>
<p>* 조사·수사기관에 직접 접수된 공익신고는 필요한 조사·수사 실시, 국회의원·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위원회 또는 조사·수사기관에 이송, 기업 또는 단체 등의 대표자·사용자에게 접수된 공익신고는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위원회 또는 조사·수사기관에 이송</p>	

○ 공익신고자 보상·포상·구조금 지급

처리절차	처 리 내 용
보상·구조금 지급 신청 및 포상금 추천 발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고자가 위원회에 보상·구조금의 지급 신청 -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및 발굴
↓	
보상·포상·구조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상·포상·구조금의 지급 요건, 지급 사유 등 조사·확인
↓	
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상·포상·구조금의 지급 요건,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 심의·의결
↓	
전원위원회의 지급 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상·포상·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결정
↓	
보상·포상·구조금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상·포상·구조금 결정서 정보, 결정통지서 신고자에게 송부 및 보상·포상·구조금 지급

○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

처리절차	처 리 내 용
보호신청 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서 접수·처리부 등록 (보호조치,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, 신변보호, 책임감면)
↓	
조사 및 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인·피신청인·참고인등 조사, 관련자료 제출 요구
↓	
위원회 심의·의결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인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보호조치)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조치 취소 요구 등 보호조치결정 - (비밀보장) 비밀보장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, 고발 - (신변보호)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 (*긴급한 경우 위원회 사후보고) - (책임감면)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책임감면 요구 2. 기각 : 신청인의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등 3. 각하 :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
↓	
처리결과 통지 (위원회→신고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결정서 정보 첨부 - 보호조치결정의 경우 30일 이내 행정소송 미제기 시 확정

사 업 명						
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(1136 - 366)						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심사보호국		010	016
명칭					일반 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6	366
명칭	국민권익증진	반부패청렴정책강화	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정부보조금 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	359	746	727	854	854	108	14.5

4. 사업목적

- 정부보조금 통합신고센터 운영
 - (부정수급 신고처리) 복지·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신속·정확한 처리를 통해 국가 재정 누수 방지
 - (신고센터 운영)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·관리

-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
 - (공공재정환수법 교육 및 홍보)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뉴얼·사례집 등의 제작·배포를 통한 법 대상기관 업무담당자 교육 및 홍보
 - (신고처리 및 이행실태 점검)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등에 대한 신고접수·처리 및 부정이익 등 환수,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도 운영실태 점검
 - (공공재정환수법 발전방안 연구)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등을 통한 공공재정 환수법 발전방안 연구 등을 통해 법 운영체계 개선
 - (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)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게 법정 보상금 지급
 - (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포상금) 부정청구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자 등에게 포상금 지급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 운영
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58조의2, 제59조
 - 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9조의2 제3항 제2호~제5호
 - 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제6조의2 제5항
-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
 -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, 제19조, 제23조, 제26조

② 추진경위

-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 운영
 - 정부차원의 복지사업 부정수급 통합신고 핫라인 구축·운영
 - ※ 제2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회의('13.9.3), 제18차 국가정책조정회의('13.9.12)
 - 「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」 업무개시('13.10.15.)
 - 「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」로 확대·개편('15.1.6.)
 - ※ 기재부 「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」('14.12.4.)
-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
 - 19대 국회 제출('15.6.17.), 정무위 법안소위 심의('15.11.)

- 법안 폐기 및 재입법절차 추진('16.5.)
- 20대 국회 제출('16.6.27.), 국회 정무위 공청회 개최('17.9.25.)
-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('18.3.28.),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('18.7.24.)
-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회부('18.9.20.)
-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국회 본회의 의결('19.3.27.), 공포('19.4.16.)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사항 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854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국민, 복지·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,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등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사항 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- 정부보조금 통합신고센터 운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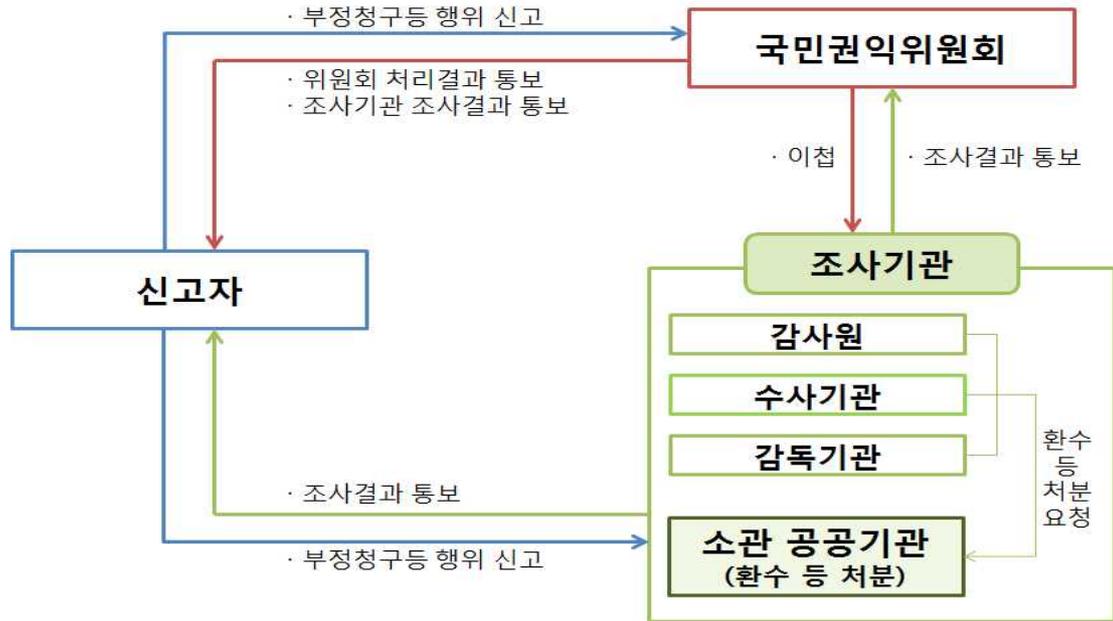
○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

□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신고 접수·처리

○ 주요업무

- 위원회에 접수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등 행위 신고 사건 처리

○ 업무흐름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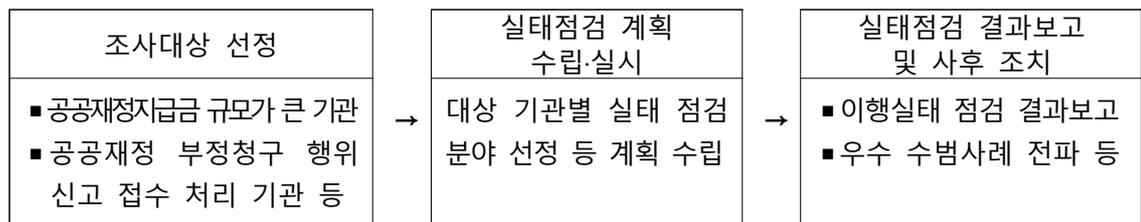
□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

- 공공재정환수법 대상기관 중 유형별, 신고접수 처리현황 등 일정 기준에 의해 선정된 기관을 방문하여 부정이익등 환수, 제재부가금 부과 등 이행실태 점검

○ 점검사항

-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, 부정이익등 환수, 제재부가금 부과,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,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 등 이행실태 점검
- 공공재정 환수제도 관련 제도개선 등 우수 수범사례 발굴
-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관련 애로사항 및 기타 의견수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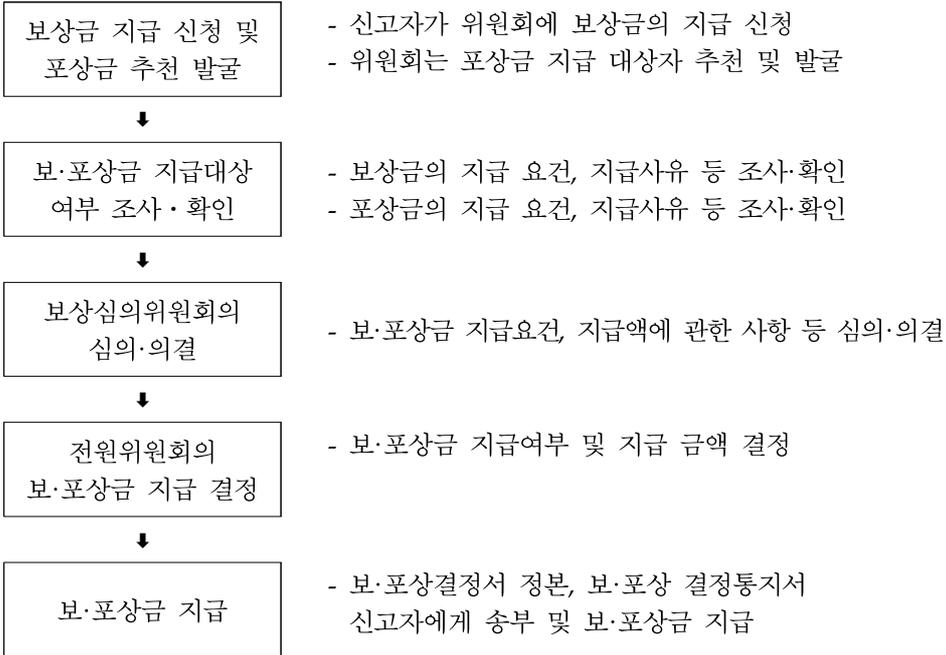
○ 업무흐름도



□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·포상금 지급

○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에 기여한 경우는 보상금을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

○ 업무흐름도



사 업 명
청탁금지제도운영 (1136 - 367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 위원회	부패방지국	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6	367
명칭	국민권익증진	반부패청렴정책강화	청탁금지제도운영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청탁금지제도운영	215	427	347	303	303	△124	△29.0

4. 사업목적

- 각급 기관 청탁방지담당관 교육, 강의 및 각종 교육자료 지원 등을 통한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
-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법 해석기준 마련
-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조사 등의 처리
- 청탁금지법 발전방안 연구 및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
- 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·포상·구조금 지급을 통한 자발적 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○ 법령상 근거

- 청탁금지법 제12조(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), 제19조(교육과 홍보 등), 같은법 시행령 제42조(교육 등)

○ 추진경위

- 국무회의시 '공정사회 구현,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'의 일환으로 입법 필요성 제기('11.6.14.)
- 정부입법절차 진행('12.5.7.~'13.7.30.), 정부안 국회 제출('13.8.5.)
- 정무위 법안소위 법안심사('14.4.25. 등 6회 실시)
-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('15.1.12.)
 - ※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제외하고, 법 적용대상을 사립학교와 언론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입법적 합의
-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및 본회의 의결('15.3.3.)
-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정·공포('15.3.27.)
- 공개토론회, 직종별·전문가 간담회, 정책토론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, 시행령안 마련('15.3월~'16.5월)
-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 정부입법절차 진행('16.5.13.~9.6.)
 - ※ 사고·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 가액 범위(음식물 3만원 이하, 경조사비 10만원, 선물 5만원)
-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(약칭: 청탁금지법) 시행('16.9.28.)
-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('18.1.17.)
 - ※ 선물·경조사비 가액 범위 및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상한액 개정(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이하, 경조사비 5만원 이하, 국공립학교·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시간당 100만원)
- 청탁금지법 일부개정('19.11.26, 시행 '20.5.27)
 - ※ 외부강의 신고대상·기한 개정(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,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)
- 청탁금지법 시행령('20.9.10.) 개정
 - 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올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
- 청탁금지법 시행령('21.1.19.) 개정
 - 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 지속, 방역 단계 상향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된 농임축수산업계를 고려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당해 설 명절 기간('21.1.19.~'21.2.14.) 동안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

- 청탁금지법 (21.12.7.) 개정
 - ※ 부정청탁 대상직무(형의 집행, 수용자의 지도·처우·계호 업무 등) 추가, 비실명 대리신고제 및 구조금 제도 도입(신설)
- 청탁금지법 (21.12.16.) 개정
 - ※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등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하여, 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하여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변경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303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공직자등, 일반국민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□ 주요업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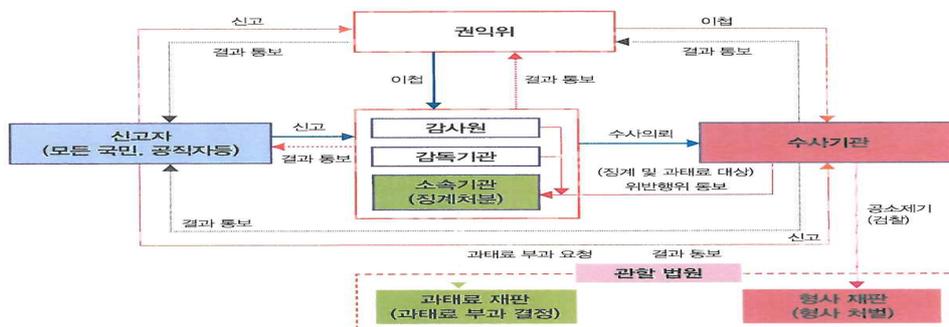
-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·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
-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등에 관한 유형, 판단기준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
-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등에 대한 신고의 안내·상담·접수·처리 등

□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건 처리

○ 주요업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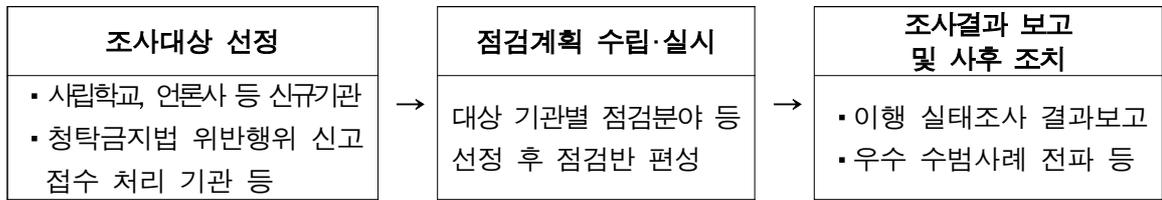
- 심사기획과를 통해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건처리

○ 업무흐름도



□ 청탁금지법 운영·이행 실태조사

- 청탁금지법 대상기관 중 신고접수 처리현황 등 일정 기준에 의해 선정된 기관을 방문하여 청탁금지법 신고접수 처리 등 운영 실태 조사
- 점검사항
 - 청탁금지법 교육현황, 신고접수·상담 안내 등 운영 실태 조사
 - 위반행위 신고사건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실태조사
 - 청탁금지법 관련 제도개선 및 체감 변화사례 등 우수 수범사례 발굴
 - 청탁금지 제도운영 관련 운영 애로사항 및 기타 의견수집
- 업무흐름도



사 업 명
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(1136 - 368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부패방지국		010	016
명칭					일반 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6	368
명칭	국민권익증진	반부패청렴정책강화	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	-	301	301	281	281	△20	△6.6

4. 사업목적

- 각급 기관 이해충돌방지법 업무담당자 교육 및 교육자료 지원 등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역량 제고를 통한 이해충돌방지법 안정적 정착 도모
-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명확한 법 해석기준 수립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체계 개선
-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조사 등의 처리
-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·포상을 통한 자발적 신고 활성화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법령상 근거
 -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7조, 제24조
- 추진경위
 - 「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」 국회 제출(‘13.8.)
 - ※ 부정청탁, 금품 수수 및 이해충돌방지 3가지 분야 모두 포함
 -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제외한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본회의 의결(‘15.3.) 및 시행(‘16.9.)
 - ※ 이해충돌방지는 도입방식, 적용범위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정청탁금지, 금품등 수수금지 부분만 포함
 - 「공무원 행동강령」에 이해충돌방지규정 우선 반영·시행(‘18.4.)
 -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」 입법예고(‘19.7.19.~8.28.)
 - 차관·국무회의 의결 및 정부안 제20대 국회 제출(‘20.1.)
 - 차관·국무회의 의결 및 정부안 제21대 국회 제출(‘20.6.)
 - ※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기존 법률안 폐기, 재입법예고(‘20.5.19.~6.8.)
 -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」 정무위 전체회의(4.22), 법사위 전체회의·본회의 의결(4.29.)
 -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정(‘21.5.18.), 시행(‘22.5.19.)
 -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」 제정(‘21.12.31.), 시행(‘22.5.19.)
 -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」 제정(‘22.2.18.)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281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공직자, 일반국민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주요업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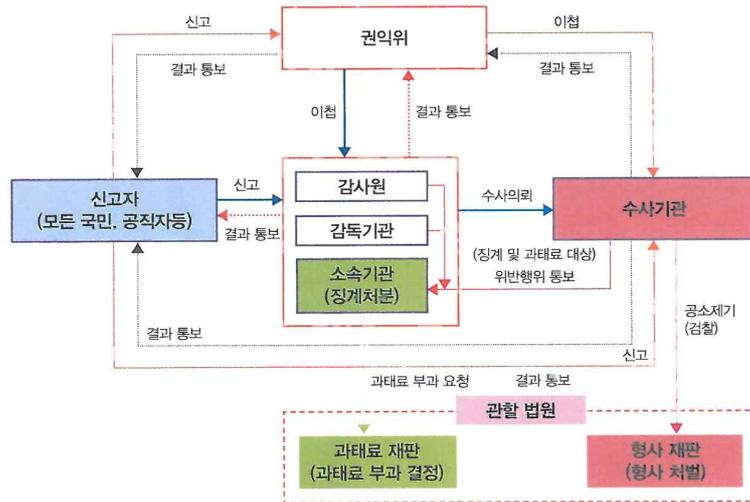
-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·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이해충돌 등에 대한 신고의 안내·상담·접수·처리 등
-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

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접수·처리

- 업무개요

-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사건처리
- 접수된 법 위반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,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으로, 그 외에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 이첩

○ 업무흐름도



□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실태 점검

조사대상 선정	→	실태점검 계획 수립·실시	→	실태점검 결과보고 및 사후 조치
기관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선정		행위기준별 집중점검 분야 등 조사 계획 수립		이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 제도개선 사례 발굴 등

□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·보상

○ 신고자 보호

- '공익신고자 보호법'의 내용을 직접 규정 또는 준용
- 직접규정 : 신고방해 및 취소강요 금지, 불이익조치 금지, 자진신고 등에 대한 책임 감면 등
- 준용규정 :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,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, 특별보호조치 등

○ 신고자 보상

- 보상금·포상금·구조금의 지급 대상을 직접 규정하되, 지급 절차 등은 '부패방지권익위법' 또는 '공익신고자 보호법' 준용

< 신고자 보호·보상 관련 규정 준용 법률 >

구분	신고자 보호	신고자 보상 (보상금·포상금·구조금)	
		지급 대상	지급 절차
준용 법률	공익신고자 보호법	직접 규정 (신고한 기관과 무관하게 모두 지급)	(보상금·포상금) 부패방지권익위법 (구조금) 공익신고자 보호법

사 업 명
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(1136 - 369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 위원회	부패방지국		010	016
명칭					일반 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6	369
명칭	국민권익증진	반부패 청렴 정책 강화	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채용비리통합신고 센터운영	-	-	-	114	114	114	순증

4. 사업목적

-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전담조직인 '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(국정과제 No.91) 설치·운영
 -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접수·처리 및 채용실태 조사
 - 공공기관 공정채용 교육·홍보를 통한 공정채용 문화 정착
- ※ 기존 공공부문 공정채용 관리 기구인 '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'(임시·한시 조직)을 확대·개편하여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로 상설조직화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○ 법령상 근거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59조
-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14조

○ 추진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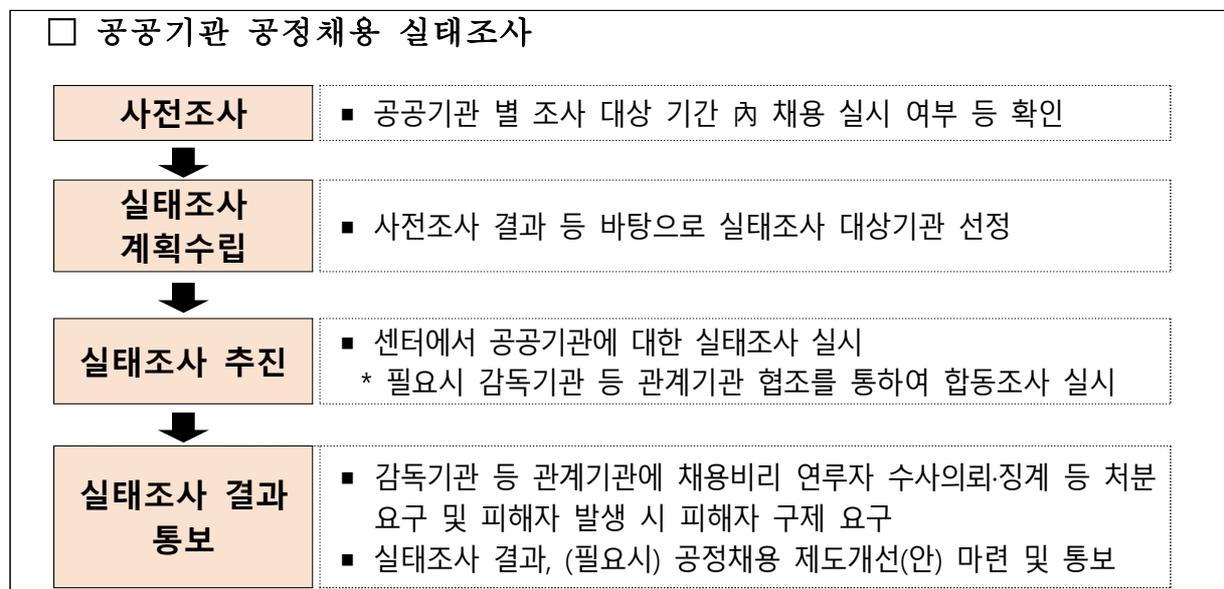
- '17년 일부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의 이슈화로, 기재부 주관으로 '18년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실시('17.10.16 ~ 12.31)
- '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' 출범 및 추진단 주관 '19년 ~ '22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('18.11~'22.12.)
- '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' 국정과제(91번 "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") 선정('22.5월) 및 신고센터 출범('23.1.1.)을 통한 공정채용 관리 기능 지속 수행 및 채용비리 사전예방 기능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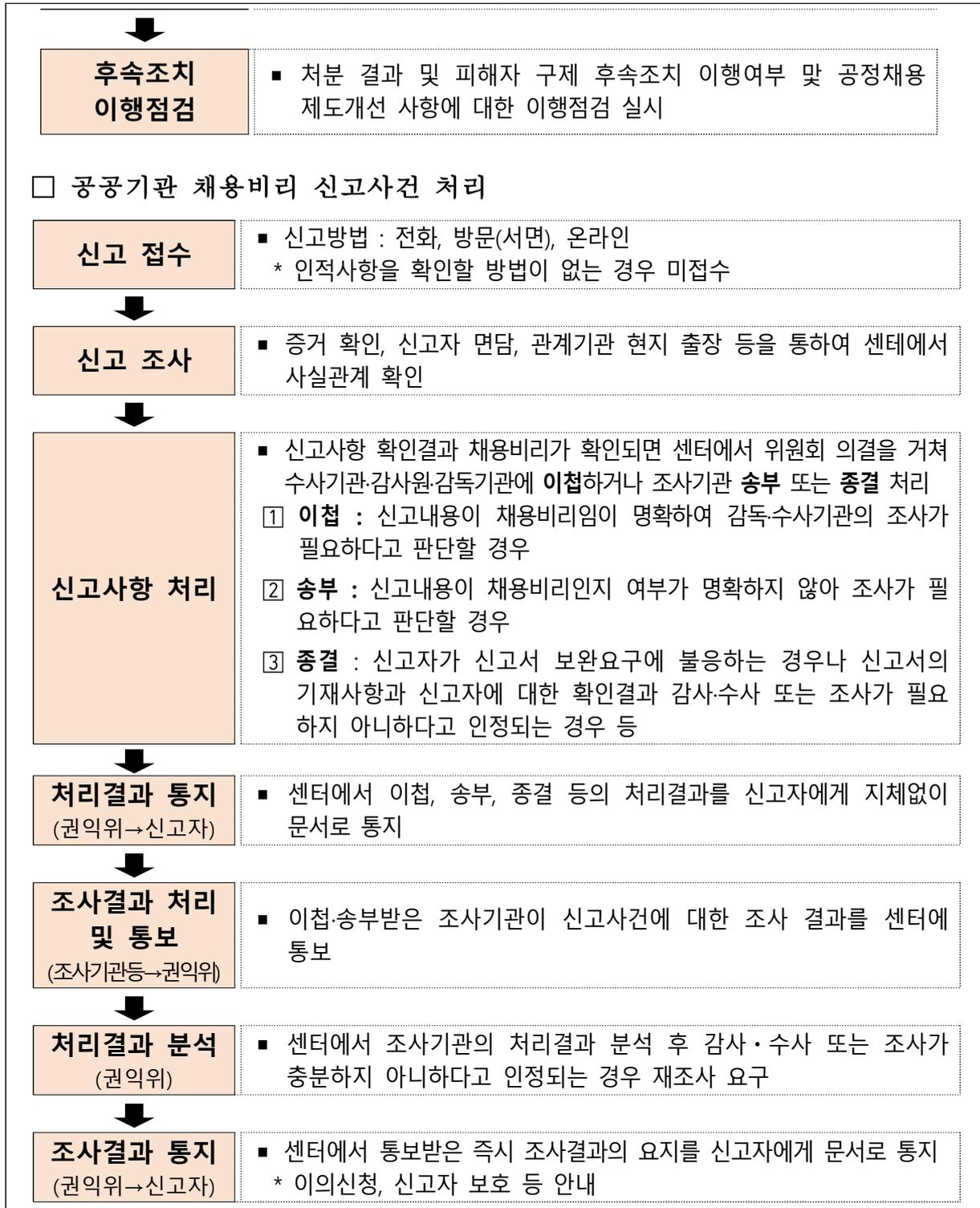
※ 임시·한시 조직인 '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'을 확대·개편하여 상설 조직인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한 공정채용 관리 기능 강화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114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공직자, 일반 국민

7. 사업 집행절차





사업명
행정심판운영 (1137 - 37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행정심판국		010	016
명칭					일반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7	370
명칭	국민권익증진	행정심판	행정심판운영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행정심판운영	1,120	1,076	1,076	1,069	1,069	△7	△0.7

4. 사업목적

- (행정심판운영지원)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상임위원 활동 수당, 국선 대리인·자문 사례비, 공공요금 등 경상경비
- (전문검토위원운용) 행정심판 사건 중 보훈사건 조사를 위하여 법률 전문가 등을 전문검토위원으로 채용·운용
- (담당자전문교육등) 각급 행정심판위원회 및 처분청 업무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심판제도 운영
- (모의행정심판경연)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행정심판의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제공하여 행정심판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행정심판제도의 활성화 도모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법령상 근거

- 「대한민국 헌법」 제107조제3항

제107조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.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,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.

- 「행정심판법」 제6조제2항

제6조(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) ②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(이하 “국민권익위원회”라 한다)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·재결한다. (이하 생략)

- 추진경위

- 1985년 행정심판법 제정
- 1995년 국무총리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확대
- 2008년 행정심판법 개정(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통합)
- 2010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 변경
- 2018년 국선대리인제도 도입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1,069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국민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